
2015년도 민방위계획



서울특별시 중구

[목 차]

I. 2015년 민방위계획 운영	1
II. 민방위계획 개요	2
1. 민방위 여건과 기본방향	3
2.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정부, 시·도)	4
3. 2015년 민방위계획 주요 개선사항	5
III. 서울시 민방위 업무 추진계획	7
1. 민방위편성·교육 개선을 통한 민방위대 역량 강화	7
가. 체계적인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7
나. 지원(여성)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16
다. 기술지원대 운영 활성화	17
라. 민방위대원 안전·안보교육 강화	19
2. 안정적인 민방위시설·장비 확보·운영	25
가. 대피시설 개선 및 체계적 관리	25
나.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공급	29
다. 민방위장비 확보 및 운용 효율화	31
라. 화생방 방호체계 강화	34
마. 민방위 경보체계 개선	43
3. 민방위사태대비 정예 민방위 구현	46
가. 민방위의 날 훈련 실효성 강화	46
나. 민방위대 동원태세 확립	51
다. 민방위대 검열 내실화	57
라. 주민신고체계 확립	59
마. 혈액공급 지원대책	62
바. 응급의료 지원대책	66
IV. 행정 사항	73

I . 2015년 민방위계획 운영

□ 민방위계획 작성 근거

- 민방위의 정의 (민방위기본법 제2조)
“민방위”란,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 민방위계획(민방위기본법 제11조, 12조, 13조, 14조)
 - 집행계획 :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계획
 - 시도계획 : 집행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도계획을 작성하여 시도협의회 심의를 거쳐 작성하는 계획
 - 시군구계획 : 시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구계획을 작성하여 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작성하는 계획

□ 민방위계획의 운용

- 민방위계획은 각 분야별로 시행하는 주요 시책의 방향과 계획을 개괄한 것으로 시책추진시 부서간 협조 및 연계성 유지를 위한 기본 참고 자료임
- 분야별계획의 세부집행은 부서·기관별로 수립된 자체계획 및 업무지침 등에 의하여 추진하며, 본 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 및 기관간에 상호 연관된 사항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여야 함
-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개선·보완할 사항은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 시행하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여야 함

II. 민방위계획 개요

□ 성 격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의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연간계획
- 제8차 민방위기본계획(2012~2016)의 제4차년도 집행계획

□ 근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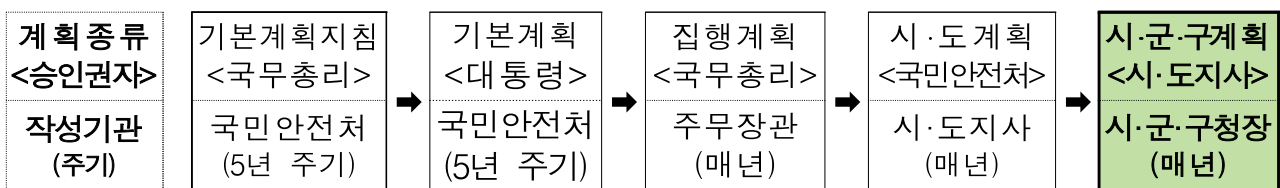
- 『민방위기본법』 제12조1)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작성내용

- 민방위 제도, 편성, 교육, 훈련, 시설·장비, 경보발령, 화생방 방호 등
- 「제8차 민방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집행계획 작성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2)에 따라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은 민방위집행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봄

□ 작성체계



1) 민방위기본법 제12조 (집행 계획)

-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달받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8.2.29>
- ② 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집행 계획을 시·도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민방위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이하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⑦ 이 조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개정 2007.1.26>

1 민방위 여건과 기본방향

□ 안보환경

- 북한의 빈번한 동해안 미사일 발사, 4차 핵실험 위협, MDL 침범 등 상시적인 도발 위협이 내재해 있어 그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유동성 증가
-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 가능성 등 일본방위정책의 근본적 변화로 한반도 안보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내재
- 주변국가의 영토분쟁 등 국가 간 무력충돌 가능성 증가

□ 재난환경

- 전 세계적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 및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재난 유형의 다양화·복합화·대형화
- 세월호 참사 이후 뿌리 깊은 안전 불감증과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우려 증가

□ 민방위 인식의 변화

-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각종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등에 대한 필요성 및 국민 관심 고조
- 안전관련 조직 통합 및 지휘체계 일원화 추진에 따른 국민안보의식 및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민방위의 역할 재정립 필요

〈 대통령 말씀 〉

- 대형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할 것(수석비서관회의, '14.4.21)
-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임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 '14.5.19)
- 각종 재난 사고와 다중 이용시설 테러나 화재 등 복합적인 상황을 상정해 발생 초기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훈련 필요 (국가안전보장회의, '14. 8.1.9)

2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정부,시·도)

① 민방위운영 분야

추진과제	세부과제
①-1. 민방위교육 개선을 통한민방위대 역량강화	1) 실전체험 위주의 민방위 교육 강화 2) 수준 높은 민방위 교육을 위한 강사 정예화 3) 지원(여성)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①-2. 국민보호를 위한 민방위훈련 실효성 강화	1).안보상황과 지역여건을 반영한 민방공훈련 특화 2) 재난여건 및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훈련 강화 3) 지역 및 주민의 초동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소집단 훈련 강화 4) 주민 참여형 훈련 평가를 통한 훈련단위 책임성 강화 5) 초·중·고 학생 및 학교단위 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민방위훈련 강화 6) 민방위 및 자발적 훈련참여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①-3.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관리	1)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2) 공공용 대피시설 운영관리 강화 3)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개선 4) 민방위장비 확보·활용 및 유지관리
①-4. 민방위 경보체계 개선	1) 접경지역 등 경보사각지역 해소 민방위 경보단말 확충 2) 첨단IT기술을 활용한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마련 3) 민방위경보시스템 기능개선 4) 신속·정확한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확립
①-5. 화생방 방호체계 확립	1) 민방위대 화생방 방호조직 편성 2)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관리 3) 화생방 장비물자 점검·관리 및 방호시설 확충·관리

② 민방위사태 시 조치 분야

②-1. 민방위대 동원태세 확립	1) 민방위대 동원매뉴얼 정비 2) 동원사태 대비 인적·물적 관리 3) 동원민방위대원의 보상·치료 및 실비보상	
②-2. 민방위대 점검열내실화	1) 지역, 직장 민방위대 대비 태세 실질적 운영 강화	
②-3 응급의료 지원대책	1) 위기상황 전제 2) 조치 방향 3) 보건복지부 임무와 역할 4) 피해상황에 따른 조치사항	
②-4 혈액공급 지원대책	1) 위기대응 목표 2) 위기대응 지침 3) 위기경보 4) 위기경보 발령 절차	

3

2015년 민방위계획 주요 개선사항(정부,시·도)

과제명	2014년 민방위계획	2015년 민방위계획
민방위대 교육개선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원대 운영 활성화 ● 국민행복지킴이 민방위 마스코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도 정책연구용역에 반영 추진 ● 지원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 민방위대 인적 자원 관리 DB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전문교육을 위한 2년 1회 실시 ● 지원(여성)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중앙방재교육원) - 지원(여성)민방위대 활동 운영근거 마련
민방위대원 안전·안보 교육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확충 ● 교관 양성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 확대 운영 ● 민방위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방식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대장 직접전달 ⇒ 직접전달 + 등기 + SMS + 이메일 등 병행 ● 재난유형별 교육과정 다양화('14~'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태 해결식 교육방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권역별 수요조사('15년) - 예산 확보 및 구축 추진('16년, 31개소) ● 실전체험위주 민방위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 방식 개선 - 재난안전활동 참여자 교육인정 확대 - 민방위훈련 참여자(3년차이상) 교육인정 확대 ● 수준 높은 민방위교육 강사 정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입교교육 실시
민방위 훈련 실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공 2회(3,8월), 재난대비 4회 -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추진 ● 민방위공감대 확산 및 참여 홍보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라디오, 재난문자방송 등 사전 홍보 강화 및 TV 스포츠 업그레이드 - UCC 등 영상물, SNS 등 뉴미디어 활용 온라인 홍보 강화 ● 공동 협력체계 확립으로 관계기관 역할 분담체계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경찰·행정공무원·민방위대원 역할 분담 ● 학생·외국인 등 재난취약계층 및 접경지역 훈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학사운영계획에 민방위 교육시간 반영 - 외국어 홍보물 제작 및 외국인 학교에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훈련 실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공 2회(3,7월), 재난대비 등 5회 - 안보상황과 지역여건을 반영한 특화된 민방공훈련 실시 ● 재난여건 및 지역특성 맞춤형 훈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 재난발생지역 등 재난취약지역 선정 - 재난취약계층 등 안전사각지대 훈련 집중 ● 초동대처 능력을 위한 소집단 훈련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 확대 등 - 주변 위험지역 사전예찰 등 실습·체험 훈련 ● 초중고 학생 및 학교단위 안전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일정에 민방위훈련 일정 반영 의무화 - 학생 흥미유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시설장비 확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대피시설 구축 기준 표준화 ●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14~'18년) ●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지방자치단체('14년, 6개소) ● 민방위 장비관리 개선대책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별 과부족 장비의 조정·분배, 관리전환 등 민방위 장비 관리·개선계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9년까지 개소당 3.84억원→6.72억원 ● 대피시설 관리 강화방안 마련 및 '15년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매뉴얼 반영 ●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시설 1,295개소 중 956개소 교체 ● 민방위방비 운영 매뉴얼 보완·정비

과제명	2014년 민방위계획	2015년 민방위계획
경보 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역 및 도심지 경보사각 지역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역 30개소 확충, 도심지 31개소 확충 •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내 경보방송 시스템 모델 개발('14.4월) - 지능·맞춤형 통합경보시스템 연구개발('16.4월) • 노후 경보장비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역 및 도심지 경보사각 지역 해소 민방위 경보단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역 30개소 확충, 도심지 31개소 확충 • 민방위 경보시스템 기능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채널 위성 발령 → 다중 채널 위성 발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시도 동시 위성발령 체계 구축 • 신속정확한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확대 개편
화생방방호 체계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생방 주민보호 통합관리시스템 연구개발('13~'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생방 주민보호 통합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추진(~'14년) - 화생방 오염 예측모델(S/W) 개발 • 국가 화생방 방호체계 정립을 통한 화생방대책 법령 마련('13~'14년) • 대피시설의 화생방 방호기능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시·도별 1~2개소(개소당 1.5억원) - '16년부터 시행 확대 • 화생방 장비물자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독면 성능검사 및 관리방안 마련 •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10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대 화생방 방호조직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원대 : 시군구 단위 1개대(20명) 편성 - 직장민방위대 : 중대규모(100명)이상 직장에 1~2개 분대편성 • 방독면 보급 및 관리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민방위대원은 80% 수준으로 보급 확대 - 직장민방위대는 전체 인원대상 보급 • 방독면 관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효 경과 방독면에 대한 정기 성능검사(년1회) -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성능 부적합 제품 폐기 • 화생방 시설장비 확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관리기관 수시점검 및 전문기관 정기점검 - 화생방 분대장비기술 : 지원대 8종, 직장대 5종
응급의료 지원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상황접수 및 전파체계 유지 • 현장응급의료소 편성 및 업무 수행 절차 마련 • 현장응급의료소 각 지원반 별 임무 부여 • 현장응급의료소 업무수행 절차 마련 • 재난유형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지원 등의 의료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관할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임무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으로 응급환자 및 다수 인명피해 발생시 응급의료 지원 - 상황관리 및 유관기관 비상통신망 유지 - 응급의료 자원동원 →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 - 현장에서 이송된 응급환자 진료대응체계 강화 • 지방자치단체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진료강화 및 여유병상 확보 -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 및 현장응급 의료소 설치
혈액공급 지원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공급장애 위기 발생에 대한 조기경보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원 파업, 헌혈급감 등 위기 발생시 대처 • 혈액부족 사태 발생시 사태수습/조치 • 위기 발생 대비 혈액확보 비상대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공급 지원 위기대응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공급장애 위기 발생에 대한 조기경보 체제를 구축 및 상황 조기 인지대처 - 위기경보 수준별 위기관리 대책 수립 -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혈액확보 비상대책 준비, 위기 발생시 채혈과 공급체계 유지

Ⅲ. 민방위 업무 추진계획

1 민방위편성·교육 개선을 통한 민방위대역량 강화

가. 체계적인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2015년 중점 추진계획

- ❖ 효율적 민방위대 관리를 위한 민방위대 편성
 - 신규편성, 의무해제자 및 누락자 정리 등 자원의 철저한 정비
 - 여성 통대장 지휘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 ❖ 2015년도 민방위대 편성·방법 강화
 - 2015년도 민방위대 편성
 - 의무자 : 20~40세 남자(1995.1.1.~1975.12.31.)
 - ※ 1974년생 의무 해제, 1995년생 신규 편성
 - 군경력, 주특기 등 연동관리 추진(예비군과 병행)
 - ※ 기술보유자(전기·통신·화생방 등) 예비군 ⇒ 민방위대원으로 이동시 연동하여 기술지원대에 편성·운영

▶▶▶ 2014년 추진사항

- ▶ 민방위대 편성 및 변동자원 관리 : 상반기(1.1~6.30), 하반기 (7.1~12.31)
 - 전·출입자, 편성누락자, 제외대상자, 학생신분 변동 정비 등

대 별	대 수	대원수	대 원 수 ('14.12.31 현재)			
			의무자	41세 이상 대장 등	여자대장	지 원 자
계	379	21,474	21,089	205	157	23
통 대	247	8,541	8,301	89	149	2
기술지원대	1	71	49	1		21
직 장 대	131	12,862	12,739	115	8	

□ 체계적인 민방위 인적 자원 관리 및 운영

- 민방위대상 인적자원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민방위 행정시스템 구축
- 인구증감, 연령구조 변동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방위 인적 자원의 변동을 예측하여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계획 수립

□ 여성민방위대장의 증가 등 지휘력 약화 보완대책 추진

○ 부대장 지정 추진

- 통민방위대장이 여성 및 65세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가 힘들거나 지휘경험이 적은 통대장인 경우 지원민방위대원 중 장교, 하사관 출신 또는 현역병 출신중 등 지휘 통솔력 있는 부대장을 지정하여 현장지휘 체계 강화
- 서울행정시스템에서 병무정보를 확인하여 민방위대 직책 항목에서 '민방위대부대장' 선택

○ 지원 공무원 배치

- 민방위 훈련 등 업무추진시 여성통대장에 대해서는 가급적 구·동 지원 공무원과 組구성



○ 민방위대장 교육 시 지휘훈련 체험·실습 위주 교육 보강 실시

- 민방위사태 발생 시 대장의 지휘훈련 체험·실습
- 민방위대장의 임무·역할(주민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안내 등)

○ 자치구 대항 여성통대장 및 지원여성민방위대 경진대회 개최

□ 민방위대원 연락처 100% 입력 관리

○ 민방위대 편성 시부터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등) 서울행정시스템에 100% 입력(필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수집하여 민원 발생 소지 해소

□ 편성 누락자원 정비

- 구에서 수시로 동별 편성 누락자원 현황 검색하여 누락자원 정비토록 조치
- 특히, 2015년 민방위대 편성시 누락자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누락자원 검색

□ 역할과 기능 중심의 민방위대 편제 운영

○ 편성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 민방위대 종류

- 지역단위 : 통 민방위대, 민방위기술지원대(자치구 단위)
- 직장단위 : 직장민방위대

민방위대 편성자원

○ 대 상

- 의무자 : 20~40세 남자, 2015년도 대상자(1995.1.1 ~ 1975.12.31.)
- 지원자 : 17세 이상으로 “민방위대 편입신청서”를 제출한 자

○ 법정 제외대상자(민방위기본법 제 18조)

구 분	제 외 대 상
1. 국회의원 및 군인·경찰 공무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 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 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 이상 승선하는 자 * 외항선의 선원에는 외구여객선승무원을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구분	제외대상
3.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의거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4.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심사제외자 : 동 민방위협의회 심의

※ 재심의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로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된 자

-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정도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직권제외자 : 동 담당자 직권 제외 처리

- ✓ 주민등록상 말소자(거소불명등록자)의 경우 해당 동에서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일 기준으로 담당자 직권제외 처리
- ✓ 실종자의 경우 담당자의 직권 제외는 불가,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절차를 통하여 제외처리 될 수 있음을 안내

민방위대 편성방법

1. 통 민방위대(지역민방위대)

○ 조직단위 : 통 단위(민방위대장 - 통장)

○ 단위대 편성

- 임무위주로 4개대 편성 : 상황전파, 대피통제, 인명구조, 소화
- 민방위대 규모에 따라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로 편성

규모별	29인 이하 (분대급)	30~80 (소대급)	81~300 (중대급)	301~1,000 (대대급)	1,000인 이상 (연대급)
단위대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 지역 특성에 따라 연령별 또는 자연부락 단위별로 구분하여 편성
- 민방위대장은 필요에 따라 단위대장의 지휘통솔이 용이하도록 각각 단위대의 하위 제대를 둘 수 있음
 - ※ 매년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모든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 등 통지

2. 민방위 기술지원대

- 편 성 : 자치구 당 1개대
- 규 모 : 50~200명을 기준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정규모로 편성
 -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 기술자 보유현황과 지역특성을 고려
- 대 장 : 구청장(당연직)
- 부대장 및 단위대장 : 대장이 소속대원 중 임명
- 대 원(1~4년차 대원으로 구성, 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시 5년차 이상도 가능)
 - 관할 지역의 전문직 직장대 소속 대원 위주로 기술을 보유한 대원 선발
 - 전문직 직장대 소속 대원 부족 시 지역대 대원 중 기술을 보유한 대원 선발
- 단위대 편성
 - 민방위대원의 규모에 따라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로 편성
 - ※ 규모별 편성은 지역민방위대 편성기준과 동일하고, 분대 아래에는 편의상 반을 둘 수 있음
 - 기술지원 분야에 따라 필요한 대를 두되, 기술자의 보유 현황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
 - 단위대는 4개대를 기본으로 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증감
 - 화생방대를 제외한 기타 단위대는 특성에 맞게 적의 편성
 - 민방위대장은 필요에 따라 단위대장의 지휘통솔이 용이하도록 각 단위대의 하위 제대를 둘 수 있음.

3. 직장민방위대

- 조직단위 : 직장의 사무소(사업소) 또는 사업장
- 민방위대장 : 직장의 장(다만,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 가능)
- 단위대 편성
 - 민방위대원 규모에 따라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로 편성
 - ※ 규모별 편성은 지역민방위대 편성기준과 동일
 - 직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부·의료·구호·수방·방호·복구 등 필요한 형태로 편성
 - 평소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대원은 가급적 같은 단위대 편성
 - 공장, 건물, 작업장, 사무실 등 근무지 단위로 단위대 편성

4. 민방위대 편성·관리

- 매년 1월 10일 민방위대 편성을 확정된 후 편성 제외사유 소멸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편성자 관리방법
 - 당해년에는 자원관리, 익년도부터 교육훈련 실시
- 매년 1월 10일 민방위대 편성시 새올행정시스템상 지원민방위대는 등록·관리하지 않고(기존 등록자 삭제 조치), 별도 편성·관리 추진
 - 기존에는 지원민방위대를 민방위 기술지원대 하부 단위대로 편성·관리
 - 단, 지원민방위대가 아닌 직장민방위대, 통 민방위대,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시 포함되는 일반 지원자는 기존대로 시스템상 등록·관리
 - ※ '15년부터 민방위대 편성현황에 지원민방위대는 포함시키지 않음
 - 지원민방위대 편성·관리방법에 대한 세부계획은 별도 통보 예정

5. 민방위대 편성 관련 정비·관리방법(신규)

- 민방위대 편성자원 확인·점검 : 주 1회 자체 실시
 - 민방위 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 : 자치구
 - 통 민방위대 : 동
- 민방위대 편성자원 일제정비 및 보고 : 분기별 실시
 - 민방위 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 : 자치구
 - 통 민방위대 : 동
 - ↳ 보고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시 ⇒ 국민안전처
 - 민방위대 편성자원 결산내역, 변동현황 및 정비내역 등
 - ※ 민방위대 편성자원 정기결산 보고서식은 별도 통보
- 민방위대 편성명부 서류(또는 엑셀파일) 보관 : 분기별 업데이트 관리
 - 민방위 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 : 자치구
 - 통 민방위대 : 동
 - ※ “서울행정시스템/편성관리/편성명부 및 연명부” 메뉴 활용

6. 신검결과에 따른 민방위 편성방법(신규)

신검결과	명 칭	시기별 편성내용			
		시 기	군복무	예비군	민방위
1~3급	현역입영 대상자	군복무 전	×	×	×
		군복무 중	○	×	×
		예비군 중	×	○	×
		예비군 후	×	×	○
4급	보충역입영 대상자	군복무 전	×	×	×
		군복무 중	○	×	×
		예비군 중	×	○	×
		예비군 후	×	×	○
		예비군 면제자 (군사훈련 미필자)	×	×	○
5급	제2국민역	만20세~만40세	×	×	○
6급	병역면제	만20세~	×	×	×
7급	재신체검사	급수 판정때까지	×	×	○

나. 지원(여성)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2015년 중점 추진계획

❖ 자치구별 지원민방위대 구성 및 활동 지원

- 2014년도 미구성 자치구 구성 유도 및 운영활성화방안 강구
- 2014년도 운영 및 활성화 우수사례 전파로 활동 동기 부여
- 2015년도 자치구 경진대회 및 중앙입교 교육 실시 교육비(복제비 포함) 지원(총 250명)

▶▶▶ 2014년 추진사항(중구)

- ▶ 지원민방위대 구성 : 71명
- ▶ 「지원민방위대 과정」 중앙입교교육 실시 : 총 21명 (14.12월)
- ▶ 복제비 및 교육비 지원 : 2,757천원

□ 지원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 의무민방위대원 동원 한계 등에 따른 인력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민방위대에 지원한 남성과 여성 대원으로 구성
 - 봉사정신과 활동의지가 있는 자 적극 영입
 - 활동이 저조한 지원민방위대 재편성 및 여성민방위대원 신규편성
 - 자치구 여성민방위대연합회 구성 등 조직 정비 및 확대
- 자발적 참여 및 적극적 활동을 위한 역할 및 임무 정립
 - 평시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강사, 생활안전 예방활동 및 홍보, 비상연락체계 유지(주민신고요원) 등
 - 민방위사태시 : 군사작전 필요물자운반 노력 지원, 비상급수·관리 지원,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지원, 사후관리 복구지원

- 지원(여성)민방위대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 지원민방위대장 및 대원 교육 실시(3~11월,/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실전체험훈련장 교관 양성과정 수료자에 한해 교관 보조강사 활동 후 실기 강사로 위촉·활용
- 지원(여성)민방위대 활동 운영근거 마련
 - 조직 설립 및 구성·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
- 2015년 지원민방위대 육성지원 관련 예산액 : 총2,450천원
 - 재원부담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지원액 : 대장·대원 교육비 및 복제비
 - 교육비 : 1인당 225,000원(식비, 숙박비, 교통비, 일비)
 - 복제비 : 1인당 45,000원(민방위복, 조끼)

다. 기술지원대 운영 활성화

2015년 중점 추진계획

❖ 기술지원대 운영 및 역할 강화

- 단순인력 투입중심의 민방위대 기능 ⇒ 기능별 전문화 및 고도화 추진
- 민방위사태시 효용성이 높은 의료, 전기·통신, 토목·건축 중심 편성·운용

▶▶▶ 2014년 추진사항

- ▶ 기술지원대 편성현황 : 총 71명
- ▶ 대원편성 : 1~4년차 대원으로 구성(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5년차 이상도 가능)

□ 기술지원대 운영 활성화 대책

○ 조직전문화

- 단순인력 투입중심의 민방위대 기능을 전문화·고도화하기 위하여, 기술지원대 역할 강화

○ 운영체제

- 민방위사태시 효용성이 높은 의료, 전기·통신, 토목·건축 등 기술자격증 소지자로 편성하고, 건설기계 등 장비를 보유·운영하는 대원을 적극 발굴하여 인력과 장비를 동시에 동원할 수 있는 체제 모색

○ 구성 형태

- 구성 : 자치구당 1개대 편성 (기술보유 전문직 지역대 대원 중심 구성)
- 역할 : 물자·장비 지원, 상황전파, 인명구조, 화재방 대응, 시설복구 등 활용

○ 기술자격증, 군경력(주특기) 등 예비군과 연동, 활용방안 강구



라. 민방위대원 안전·안보교육 강화

2015년 중점 추진사항

민방위 실전교육을 위한 우수 강사 확보 운영

- 서울시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한 강사로 선정된 민방위강사 확보
- 민방위 교육일정

구 분	기 간	교육내용	교육장소
상반기	2015. 3. 2~ 6. 30	기본교육	지정 교육장
하반기	2015. 9. 1~11. 30	보충교육(1,2차)	지정 교육장

- 민방위 교육과목

연 도	교 육 과 목			
2014	통일안보	화 재	교통안전	전기가스안전
2015	안 보	화생방	응급처치	지 진

□ 2014년 교육실적 (12.31 현재)

- ▶ 편성 1~4년차 대원 : 집합교육(연1회 4시간, 기본교육·실전훈련)
- ▶ 편성 5년차 이상 대원 : 비상소집훈련 또는 민방위의 날 훈련·자율참여 실시(연1회 1시간)

구 분	교육대상(명)	교육이수(명)	이수율(%)
계	19,182	18,927	98.7
집합교육	8,719	8,604	98.7
비상소집	10,463	10,323	98.7

□ 민방위 업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 민방위분야 새올행정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 정확하고 효율적인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등을 위하여 현업부서 업무담당자를 위한 실습위주로 교육
 -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대상자 : 시·자치구 및 동 민방위업무 담당 직원
 - 인사이동 등에 따른 민방위업무 신규담당자 우선 선정 교육
 - 교육내용
 - 민방위대 편성관리, 민방위 교육관리, 시설 및 장비관리
 - 인력동원관리, 사회복지무요원 관리 등
- 민방위 전문교육 위탁교육 적극 추진
 - 대상자 : 시·자치구 및 동 민방위업무 담당자, 민방위대장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서울시민안전체험관(광나루,보라매) 등 민방위, 재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 화생방 실무과정, 민방위날 훈련실무과정, 비상대비능력 향상과정
 - 지역 민방위대장 및 여성 민방위대장 과정 등
- 민방위 대장(지역 및 직장) 위탁교육 실시
 - 전문교육기관(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시민안전체험관 등)과 연중 일정 협의를 통하여 교육 위탁
 - 전시대비 및 재난발생 시 예방과 대처요령 등 교육

□ 기술지원대 교육 정예화

- 기술지원대 정예요원 전문교육 강화
 - 정예화 : 자치구 단위 기술보유자로 구성(25대)
 - 시 주관으로 교육 일원화(교육비 지급)
 - 교육시기 : 상반기 중
 - 교육장소 : 서울시 및 광진 민방위교육장
- 관할 지역의 전문직 직장대 소속 대원 위주로 기술을 보유한 대원 선발

□ 2015년 민방위 교육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015 년	2014 년
교육과목	• 안보, 화생방, 응급처치, 지진	• 안보, 화재, 교통안전, 전기가스안전
교육기간	• 2015. 3. 2 ~ 11. 30	• 2014. 3. 3 ~ 11. 30
강사위촉	• 교육강사 위촉 : 서울시 • 강사운영 : 자치구청장 • 실기강사 : 합격자(필요원) 중 과목별 4인 이내 선정운영	• 교육강사 위촉 : 서울시 • 강사운영 : 자치구청장 • 실기강사 : 합격자(필요원) 중 과목별 4인 이내 선정운영

※ 자치구별 교육운영실태 수시 파악

2 안정적인 민방위시설·장비 확보·운영

가. 대피시설 개선 및 체계적 관리

2015년 중점 추진계획

❖ 대피시설의 양적 확보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

- 소규모 등 부적합 시설 해제와 신축건물 신규 지정으로 양질의 대피시설 확보
- 식수 및 위생시설 등 편의기능이 있는 장기대피시설 발굴
- 신속한 대피를 위한 지역별 대피시설 분포도 개선
-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지속적 정비 및 개선 - 다국어 안내표지판 지속 설치

▶▶▶ 2014년 추진사항

- ❖ 민방위 대피시설 일제 점검 및 정비 실시(2014.12.31일 현재)
 - 부적합한 대피소 지정 해제 24개소
 - 대피소 안내표지판 교체 등 정비 실시 : 91개소, 140건
- ❖ 다국어 안내표지판 설치 : 91개소 340건(2013년부터)



▶ 대피시설 확보현황(4인 3.3㎡기준)

(2014.12.31일 현재)

인구(명)	소요량(㎡)	확보량계		확보율
		개소	면적(㎡)	
124,062	102,351	91	682,236	666%

□ 대피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정립

○ 대피시설 구분

구분	설치지역(설치기준)	방법	서울시
정부지원 시설	서해5도 및 접경지역	설치	없음
공공용 시설	정부·지자체 및 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 건축법에 의거 설치된 민간 소유시설 중 대피기능을 갖추고, 방송 청취가 가능한 지하층(바닥면적 60㎡이상)	지정	4,041개소 (2014.10.20 .현재)

※ 충무지휘용 대피시설 : 충무사태시 정부 및 지자체가 지휘용 및 전시 상황 실로 사용하는 시설로써 행정자치부에서 관리

○ 공공용 대피시설의 정의 개선

- 일반 지하시설 중 다수 주민의 단기적(5시간 이내) 집단방호, 라디오 청취, 주·부 출입구 보유 등 비상대피기능을 갖춘 바닥면적 60㎡이상의 지하 시설 또는 구조물

※ 미국 FEMA의 SIP(Shelter In Place), 「건물 내 대피시설」 개념 적용

○ 매년 주민대피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 보강정비 및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

- 반기별로 지역별 주민대비 확보율 (3.3㎡ 당 4인)을 조사하여 현행화 유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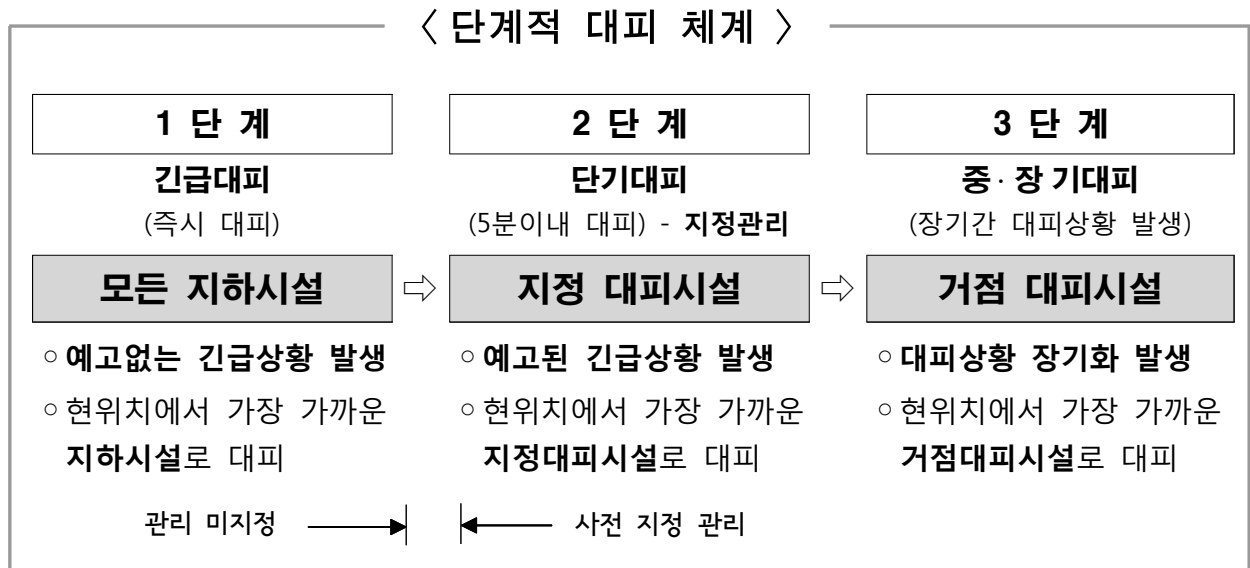
○ 대피시설 연간 통계현황 관리 : 매년 1월 3일 기준

국민안전처 추진사항

- ❖ 대피시설 관리 강화방안 마련 및 '15년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매뉴얼 반영
 - 민방위사태 또는 민방위훈련 시 실시간 상황이 전파되도록 건물 주차장 및 지하철 등 시설물 내 방송시설 활용방안 검토
- ❖ 공공용시설의 지정기준 강화, 효율적 관리 및 건축주 계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중·장기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
 -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의 중·장기 효율적 관리방안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과제 추진 검토
- ❖ 평시 개방되는 민간대피시설 소유주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시설 개·보수시 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신속한 대피 체계 구축

- 자치구(동) 단위 구역별 비상대피계획 수립
 - 시설 수, 대피인원, 대피시간 등 고려 실제 적용 가능토록 수립
 - 시설별 운영관리 및 대피 유도요원 지정 및 운영 철저
- 구역별 비상대피계획 실제 적용훈련 실시
 - 민방공 훈련시 주민, 시설주, 민방위대원 등이 실제 참여하는 구역별 순차 대피훈련 실시
 - 자치구보, 반상회보 게재 및 주민 게시판(주민센터, 아파트관리소 등) 홍보물 게시 등 비상대피시설(위치정보 포함) 주민홍보 강화



□ 중점추진 사항

- 거점 대피시설 확대
 - 현행 대피구역별로 급식·급수·의료·안정적 전기공급 등이 가능한 거점 대피시설 발굴 및 육성

- ✓ 지하상업시설로 평시 개방되어 있으며 약국, 식당, 편의점, 화장실 등이 입주한 시설
- ✓ 대피가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 지하시설에 구급·급식·급수와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지하근린시설의 지정 확대 유도
- ✓ 주차장 등 공간위주의 대피시설 지정보다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민불편 요소 해소를 고려한 적정한 공간 확보

○ 대피구역내 지역적 대피시설 분포도 개선

- 특정지점 편중지정 지양
- 주거 또는 보행시민이 실질적으로 즉시 대피가 가능토록 지역내 균
등한 분포도 유지
- 시설확보율과 관계없이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추가 지정

○ 시설 유지·관리 및 평시활용

- 자치구별 정기점검을 통한 시설 유지관리
(정기점검 분기1회, 일제점검 반기1회)

- ✓ 안내표지판 식별 가능토록 정비 및 야간 및 정전시 더 잘 보이는 야간
발광기능 안내표지판으로 점차적 교체
- ✓ 글로벌시대에 맞추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새로이 부착하는
대피소 표지판에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표기 의무화
- ✓ 전 대피시설내 방송청취 가능한 설비 확보 추진 등

- 평시활용

- ✓ 주민에게 시설공개, 관람 및 체험장, 견학장소로 활용
- ✓ 유사시 대피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익단체에 개방

나.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공급

운 영 상 황

■ 2015년 중점 추진사항

- 수질양호한 일반지하수를 민방위비상급수에 잠정포함
 - 2015년도 목표 자치구별 예비비상급수를 포함하여 비상급수 확보 극대화 추진
 - 상시 안정적인 급수대책 확보를 위해 민간공공시설 추가 지정 추진
 - 정부지원·자치단체 급수시설은 주민의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개방

■ 2014년 운영현황

- 소요량 : 3,101톤 (1인 1일 25ℓ 기준 ⇒ 음용수 9ℓ, 생활용수 16ℓ)
- 확 보 : 13개소 3,678톤 (118% 확보)

(14. 12. 31기준)

구 분	계	정부지원시설	자치단체시설	공공시설(민간)
개 소	13	1	2	10
규 모(톤)	3,678	107	100	3,471

□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개발 활용

- 비상시 안정적인 급수대책 확보를 위해 수질양호한 일반 지하수자료 확보
- 확보된 지하수자료 대체비상급수 선정으로 비상시 적극 비상급수로 활용
- 관정, 급수파이프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관리 개선대책 수립·시행
- 정부지원 및 자치단체 비상급수시설은 주민의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 개방하여 관리

□ 상시 안정적인 비상급수대책 확보

- 비상급수시설 기능 상시 유지 및 공급대책 방안
 - 고장 발견 시 신속정비(소요예산 적기 집행)
 - 공공 및 민간지정시설 부적합 판단시 개선권장
 - 필요시 급수차량 지원 등 비상시 신속한 급수공급대책 마련
- 평시 활용으로 수질이 양호한 시설은 시민 개방 활용(정부 및 자치구시설)
 - 수질검사 실적서 계첩으로 시민의 신뢰성 제고
- 동절기 (당해년도 12월 ~ 익년도 2월) 사용중지
 - 사용중지 14일 전 사유, 기간 등 안내문게시
 - 발전시설(엔진), 펌프 및 급수배관 등 동파방지 철저

□ 노후시설 정비, 관리 및 수질개선 추진

-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장비유지관리 철저
 - 수질관리를 위한 조치 : 주기적 점검으로 수질개선
 - 대상 : 관정급수설비, 비상전원공급설비(엔진 및 발전기), 전원공급설비, 저장설비, 정수 및 물탱크 설비, 건축물 등
- 실질적인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 관리책임자 지정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운영
 - 정(동장 또는 지하수담당관장), 부(동 또는 지하수 담당)
 - 관리책임자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 (개방시설 월 1회, 미개방시설 분기 1회)
- 정기점검 실시
 - 정부지원 및 자치구시설 (공공지정시설 중 음용수 포함)
 - 시 주관 자치구 합동 지도점검 : 상, 하반기 연2회(4월, 10월)
 - 자치구 주관 전수점검 : 개방시설 월 1회, 미개방시설 분기 1회 이상
 - 민간지정시설 (공공지정시설 중 생활용수 포함)
 - 자치구별 점검계획 수립, 민방위 담당부서와 합동 점검

다. 민방위장비 확보 및 운용 효율화

운영상황

2015년 중점 추진사항

- 민방위 사태수습 등을 위한 민방위장비 확충 및 운용 효율화
 - 전시·평시(재해, 재난 등)대비 민방위장비 종목별 120%이상 확충
 - 민방위장비 6종에 대한 주기적 점검·정비로 최적상태 유지
 - 비상대비 과부족 장비의 조정·분배, 관리전환 등 민방위장비 관리 개선 추진

2014년 운영현황

- 소요량 : 2,591점
- 확보 : 2,908점, 확보율 : 112%
- 연도별 실적 : '09년말 70.0% ⇨ '10년말 88.0% ⇨ '11년말 90.0%
⇨ '12년말 95.0% ⇨ '13년 10말 100.0%

(‘14. 12. 31. 기준, 점)

합 계			전자 메가폰		지휘용 엠프		응급처치 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 신호봉	
소요	확보	확보율	소요	확보	소요	확보	소요	확보	소요	확보	소요	확보	소요	확보
2,591	2,908	112%	519	499	146	97	371	392	367	379	742	969	446	572

※ 비상사태 발생대비 확보율 120% 보유

□ 민방위 장비관리 개선대책 수립·시행

- 자치구(동별)로 민방위장비의 과부족을 일제 조사하여 체계적인 소요량 확보대책을 수립·시행
- 과부족 장비의 조정·분배, 관리전환 등 민방위 장비 관리개선 계획을 추진

- 민방위장비 관리 전산화 및 효율적 운용
 - 자치구 새울시스템에 장비현황 입력·관리로 실시간 통계자료 활용
 - 국지적 민방위 사태 발생시 새울시스템 통계현황을 참고하여 인접 동 장비 지원활용 등
- 민방위장비 주기적 점검·정비로 최적의 사용가능 상태 유지

□ 효율적인 민방위장비 관리 및 운용

- 내구년한(3~10년) 경과 장비도 사용 가능성 여부를 따라 비축 관리
- 민방위대별 특성을 고려한 장비의 과부족분은 인접 민방위대별 응원지원 물자로 활용
 - 지역대는 민방위 단위대별 소요량 산정표에 의한 비축물량 산정
 - 직장대와 기술지원대는 「민방위대원수별 소요량 산정표-별첨」에 따라 비축물량 산정
- 지휘용 앰프, 환자용 들것 등은 현재 활용도가 낮아 비축율이 낮으나 전시 및 재해, 재난 등 비상시 대비 비축 지속적 추진
- 민방위장비 보관창고 확보 및 관리방법 개선
 - 시 및 자치구에서 가능한 별도 전용창고 확보
 - 자치구 여건을 고려, 인구·면적이 좁은 지역은 통합보관, 넓은 지역은 권역별 보관으로 장비관리 및 비상시 활용의 실효성 제고
 - 새울시스템에 장비현황 입력·관리로 실시간 통계자료 활용
- 민방위장비 주기적 점검·정비로 최적의 사용가능 상태 유지

□ 민방위장비 활용 강화

- 민방위장비의 재난관련기관 대여 및 재난현장 배치
- 민방위장비 재난부서 공동활용(상호지원협력)
- 재난정보 공동활용센터에 민방위장비 등록 및 자원정보 공유

<참고>

민방위장비 소요량 산정기준

○ 민방위 단위대별 소요량 산정표(지역대 적용)

장 비 명	민방위대 규모별 기준
전자메가폰	민방위 단위대 2개당 1개
지휘용 앰프	민방위 단위대 50개당 1개
응급처치세트	민방위 단위대 4개당 1개
환자용 들것	민방위 단위대 7개당 1개
휴대용 조명등	민방위 단위대 3개당 1개
교통신호봉	민방위 단위대 5개당 1개

○ 민방위대원수별 소요량 산정표 (기술지원대, 직장대 적용)

장 비 명	민방위대 원 수						
	100명 미만	100 ~ 300	300 ~ 500	500 ~ 1,000	1,000 ~ 3,000	3,000 ~ 5,000	5,000명 초과
전자메가폰	2	4	6	8	10	13	15
지휘용앰프	1	1	1	1	1	2	2
응급처치세트	2	3	4	5	6	8	10
환자용 들것	2	3	4	5	6	8	10
휴대용조명등	4	6	8	10	15	20	25
교통신호봉	2	4	6	8	10	12	14

라. 화생방 방호체계 강화

2015년 중점 추진계획

❖ 화생방전 및 재난에 대비한 시민방호역량 강화

- 화생방 방호조직 정예화 및 교육훈련
 - 화생방전 및 재난 대비 시민홍보 강화
 - 방사능 재난대비 유관기관 협조체계 확립
 - 방독면 및 화생방분대 장비물자 보급사업추진 및 보관·관리 강화
- ※ 지역민방위대원용 방독면 보급(2만5천개, 925백만원)

▶▶▶ 2014년 추진사항

- ▶ 민방위대 화생방분대 편성 : 54개 분대 570명 ('14.12.31 기준)
- ▶ 화생방장비 보급
 - 방 독 면 : 민방위대원 1인당 방독면 1개
 - 분대장비 : 직장민방위대(100명이상) 편성 ('14.12.31 기준)

구 분	목 표 량	보급현황	보 급 율
방 독 면	21,473명	16,455개	76.6%
분대장비	1,278개	1,402개	109.7%

화생방분대 편성

○ 편성기준

구 분	편성대상	편성단위	편성인원
기 술 지 원 대	자치구	자치구 당 1개 대	1개 대 : 20명
직 장 민방위대	중대급(100명) 이상 직장민방위대 의무편성	100명 이상 : 1개 분대 300명 초과 : 2개 분대	1개 분대 : 10명

※ 100명 미만 직장민방위대의 경우, 자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편성 가능

○ 편성요령

- 화생방분대 반별 편성비율은 탐지반 : 제독반 = 4 : 6
- 1~4년차 대원 중심으로 편성
- 편성대상

-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

- ✓ 자치구 민방위대원(공무원) 중 기술직공무원 우선 편성
 - 공업직렬(환경·가스·화공 등) 및 보건직렬 공무원
 - 화생방 관련학과 출신, 관련 기술·자격소지자
 - 유자격자(화생방교육 이수자 등)
- ✓ 관련분야 자격·기술이 있는 **직장대원**을 기술지원대에 우선 편성
- ✓ 자원부족 시 지역민방위대원으로 편성

※ 기술지원대로 편성된 대원은 지역 / 직장민방위대에 이중편성 금지

- 직장민방위대 화생방분대

- ✓ 관련분야 자격·기술 소지자, 군 화학특기자, 관련학과 전공자
- ✓ 화생방 유경력자 : 화생방 교육 이수자, 관련부서 종사자

※ 화생방분대원 자격 요건

구 분		관련 기술자격증
기술 자격증	화 공 자격증	공업화학기술사, 공업화학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화공기사,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환 경 자격증	토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의 료 자격증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의사, 약사, 간호사
	안 전 자격증	가스기능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기술사, 가스산업기사, 화공안전기술사
	방사선 자격증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원자로조정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방사선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면허,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 원자로조정감독자,
군화학 특기자	화 학 주특기	화학(211101), 작전통제(211102), 연막(211103), 제독(211104), 탐측(211105)
	의 무 주특기	일반의무(411101), 치무(411102), 수의(411103), 임상병리(411104), 방사선촬영(411105), 약제(41116)

○ 운영방법

- 분대장 임명

- 기술지원대 : 자치구 화생방 담당공무원 임명
- 직장민방위대 : 장교 또는 부사관 출신 등 지휘 능력·경험이 있는 자 임명

- 편성된 인원은 화생방분대원 소집교육이나 방호훈련 시 임무에 적합한 교육·훈련 실시

- 화생방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대피유도, 오염지역통제, 사태수습 등 지원 활동

- 유사시를 대비하여 방독면 및 화생방분대 장비물자 100% 확보

구 분		확보기준	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
개 인 보호장비	방독면	개인당	20개	10개
	보호의	개인당	20벌	10벌
탐비장비	탐지지(KM9)	분대당	2개	1개
	오염표지판	분대당	8세트	4세트
제독장비	제독기	분대당	6대	3대
	제독용액(DS-2)	제독기당 2통	12통	6통
개 인	피부제독제(KD-1)	제독반원당 1개	12개	-
제독물자	해독제(KMARK-1)	탐지반원당 1개	8개	-

□ 화생방분대 임무

○ 화생방분대 임무

-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

- ✓ 경보전파 및 주민 통제·대피유도
- ✓ 군·예비군·유관기관의 화생방 작전 지원 및 협조
- ✓ 필요시 오염지역 정기/수시 탐지 및 측정 실시(지원), 오염표지판 설치
- ✓ 필요시 오염 인원·장비·물자·지역(시설) 제독 실시(지원)

- 직장민방위대 화생방분대

- ✓ 경보전파 / 직장 내 오염지역 통제 / 대피유도
- ✓ 필요시 군·예비군·유관기관의 화생방 작전 지원 및 협조
- ✓ 필요시 가용범위내 오염지역 탐지 실시(지원), 오염표지판 설치
- ✓ 필요시 가용범위내 오염 인원·장비·물자·지역(시설) 제독 실시(지원)

□ 화생방분대 교육·훈련

- 전담공무원 확보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전문성 제고
 - 시 및 자치구에 화생방 전담조직·인력 확보로 화생방 재난대책 강화
 - 년 1회 화생방담당자 보수교육을 통한 업무 전문성 유지
 - 화생방 전문조직·인력이 미 배치된 자치구는 화생방 관련분야 유경력자 배치, 위탁교육 등 전문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전문성 제고
-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제고
 - 중앙단위 전문교육과정

과 정 명	시 기 / 기 간	교 육 기 관	교 육 대 상
화생방실무자 과정	7월, 10월 / 5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자치구 6급 이하 공무원

- 지방단위(자체교육)

과 정 명	시 기 / 기 간	교 육 기 관	교 육 대 상
방사능사고 초동대응요원 교육	3·4·6·9·10·11월 / 4일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자치구 화생방담당자 보건소 공무원
화생방담당자 보수교육	1월 / 1일 (화생방 워크샵)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자치구 화생방담당자
화생방 분대원	상반기 / 4시간	서울시	기술지원대 (화생방 분대원)

- 민방위대 화생방분대 전문인력 선발 및 임무수행능력 강화
 - 새울 행정시스템의 병적관리 조회기능을 통해 군(화학, 통제, 탐측 제독, 제독, 의무 등) 주특기를 확인하여 가급적 전문인력 선발 제고
 - 무자격자 선발시 최우선적으로 화생방분대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임무수행 능력이 가능토록 조치
 - 민방위의날 훈련시 해당임무수행을 위한 화생방분대 팀 훈련을 병행 실시하여 임무수행 능력 향상

○ 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

- 일반대원의 화생방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3~4년차 민방위대원의 현장훈련 강평시 화생방관련 VTR 방영 등 화생방재난시 대처요령 교육
- 화생방분대 교육시 자치구 해당 군부대와 협조, 화생방훈련장을 활용한 오염지역 제독요령 등 실기실습 교육 강화
- 방사능재난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 ※ 훈련실시 기관 : 원자력안전기술원, 의학원, 소방, 군, 지자체 등

□ 방독면 및 화생방 장비물자 보급·관리강화

○ 방독면

- 보급기준 : 민방위대원 1인 1개
- 보급대상 : 일반방독면(KS M6685)
 - 개정된 KS규격 적용(친환경 정화제 사용, 성능향상 등)
 - ※ 화학가스 상황하 사용 가능시간 : 6분 이상 → 15분 이상
 - 방독면 제조업체 성능보장기간 10년으로 연장
- 보급방침
 - 지역민방위대 : 정부지원 보급(기술지원대 포함)
 - 직장민방위대 : 직장 주도 보급
 - ※ 공무원 : 자치구 주도 1인 1개 보급
- 방독면 보급계획
 - 사업명 :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국고보조 사업(국민안전처)
 - 대 상 : 지역민방위대원용 방독면
 - 품 목 : 일반방독면
 - 연도별 보급수량 계획(방독면 단가 : 37천원)

단위 : 개

총 계	연도별 보급수량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5,165	519	500	846	700	800	900	900

※ 2015년도 사업비 25,900천원(국비-7,770천원, 시 및 자치구 18,130천원)

- 보관 및 관리방법

- ✓ 화생방 장비물자(방독면 포함)는 비상대비 '비축물자'로 관리
 - ↳ 저장시설 확보 필요
 - ※ 관련근거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령』 제 17, 18조
- ✓ 지역민방위대는 민방위 일반장비와 화생방장비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전용창고)를 확보하거나 구 또는 동 단위 통합보관
 - 보관장소 확보가 어려울 경우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여 전용창고로 활용
 - 전용창고 미확보시 방독면 등 민방위장비는 일반 재난물자와 별도 구분 보관
- ✓ 직장민방위대는 필요시 사무실 단위나 개인지급(캐비닛 등 보관)
- ✓ 시효초과 방독면은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폐기 또는 유효기간 연장
- ✓ 습기, 먼지, 직사광선, 침수, 결빙 등에 의해 훼손되지 않고 보급당시의 포장상태로 보관
 - ※ 지하창고 보관 지양
- ✓ 유사시 즉각 사용 가능토록 방독면 분배계획 수립 및 부착하고 주기적 점검 실시
 - 매분기 1회 점검표에 의거, 관리기관 자체점검·정비 실시
 - ※ 화생방 사태수습을 위한 민방위대원별 지급 우선순위

구 분	대 상
1순위	① 지휘요원 ②구기술지원대(① 화생방분대 ②기타분대)
2순위	① 화생방분대원 ② 경보전파요원 ③ 대피유도요원
3순위	① 인명구조요원 ② 방호요원 ③ 복구요원
4순위	위 순위에 속하지 않은 민방위대원

- 폐기 및 활용

- ✓ 국민방독면
 - KS 규격 폐기(2010년)로 민방위대원용으로 구매 금지
 - 2014년 성능검사(국민안전처) 결과 2009년 이전 생산품까지 전량 폐기 대상
 - 정화통 내 발암물질 함유되어 지정폐기물로 폐기처리(시 주관 일괄 폐기)
- ✓ 성능검사결과 폐기 대상인 방독면은 교육용 활용 후 폐기
 - 정화통 제거 후 교육훈련용 활용
 - 국민방독면은 민방위대원용이 아님으로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고 폐기

○ 화생방분대 장비물자

- 보급기준 : 구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화생방분대당 1조

- 보급대상

구 분	확보기준	구기술지원대(7종)	직장민방위대(5종)
보호의	개인당	20벌	10벌
탐지지(KM9)	분대당	2개	1개
오염표지판	분대당	8세트	4세트
제독기	분대당	6대	3대
제독용액(DS-2)	제독기당 2통	12통	6통
피부제독제(KD-1)	제독반원당 1개	12개	-
해독제(KMARK-1)	탐지반원당 1개	8개	-

- 보급방침 : 자체예산으로 확보

- 보관 및 관리방법

- ✓ 화생방 장비물자(방독면 포함)는 비상대비 '비축물자'로 관리
 ⇨ 저장시설 확보 필요
 ※ 관련근거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령』 제 17, 18조
- ✓ 유사시 즉각 활용 가능토록 1개 분대 1세트 단위로 보관하고
 출동시 휴대가 용이하도록 "휴대낭" 등 준비
- ✓ 습기나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되 가급적 최초 보급
 당시 포장된 상태로 관리
 ※ 교육훈련 시에는 교육훈련용을 별도 확보 활용
- ✓ 해독제, 제독용액 등 약제는 온도에 의한 변성가능성이 높아 보관 주의
 - 동절기 : 4~30℃의 실내 보관
 - 하절기 : 통풍이 잘되는 선선한 곳 보관
- ✓ 보호의는 구매시 가급적 "화학복"으로 하되 일시교체보단 일반
 우의의 교체시기가 도래할 경우 "화학복"으로 확보
 - 화학복은 화학물질용 보호복의 성능기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4-46)에 적합한 것으로 구매·비축
 - 민방위대용임을 알 수 있는 색상(현 민방위복과 유사색상) 및 민방위표지 부착
- ※ 해독제, 제독용액은 추후 확보기준 조정 등에 따라 추가 구매금지

- 폐기 및 활용

- ✓ 시효기간(5년)이 있는 4종(탐지지, 해독제, 피부제독제, 제독용액)은 시효초과시 폐기
 - ※ 교육훈련용으로 활용 가능한 탐지지, 해독제, 피부제독제는 『교육용』 표시·활용 후 폐기방법을 준수하여 폐기
 - ✓ 물자별 자동폐기 경우 : 시효기간(5년) 미만의 경우
 - 해독제(KMARK-1) : 바늘이 튀어나오거나 제독액이 흐르는 경우
 - 제독용액(DS-2) : 육안검사 결과 금속용기 이음새 부분이 부식되거나 용액누출 시
 - ※ 제독용액이 공기와 접촉시 제독 성능저하 및 겔화되어 사용할 수 없음
 - ※ 제독용액은 강알칼리성으로 다른 장비 및 물자의 부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증기는 인체에 유해함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함.
 - ✓ 외부에 유출되어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처리절차 준수
 - ✓ 물자별 폐기방법
 - 탐지지(KM9) : 절단 후 일반쓰레기로 처리
 - 피부제독제(KD-1) : 내용물을 절단 후 일반쓰레기로 처리
 - 휴대용제독기(KM11) : 파손 후 고철쓰레기로 처리
 - 보호의 : 여러 조각을 내어 일반쓰레기로 처리
 - 오염표지판 : 일반쓰레기로 처리
 - 해독제(KMARK-1) : 아트로핀/팜주사기(외형)은 내용물 제거 후 일반쓰레기로, 내용물은 지정 폐기물(폐유기용제)로 처리
 -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6 별표1 폐유기용제에 해당
 - 제독용액(DS-2) : 지정 폐기물(폐알칼리, 폐유기용제)로 처리
 -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6 별표1 부식성폐기물(폐알칼리) 및 폐유기용제에 해당
- ◆ 지정폐기물 처리 시 소량으로 폐기가 곤란할 경우, 시에서 통합하거나 권역별(2~3개 구) 조정 처리
 - ※ 직장대의 경우 소량으로 처리 곤란할 시, 시·구에서 통합처리 추진

□ 화생방 사태대비 시민교육 및 홍보강화

○ 화생방 사태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 화생방전 및 테러발생시 방독면 착용법 등 응급대처요령 주민교육·홍보 강화
- 각급 기관·직장교육, 학교 등에 화생방교육 및 홍보 활동으로 화생방 방호요령 숙지
- 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TV, 반상회보 및 다중이용 시설 VTR방영을 통한 주민홍보
- 시·군·구 홈페이지에 화생방 정보제공, 사이버홍보강화

○ 찾아가는 화생방교육 강화

- 시 기 : 민방위의 날 훈련 시 (민방공대피훈련 시)
- 대 상 : 각급 학교, 아파트,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 방 법

- ✓ 각 지하철공사 및 직장대별 방독면착용 체험훈련 강화 (역별 연 1회 이상)
- ✓ 자치구 재난취약시설 (각급 학교, 아파트단지 등) 순회교육 실시
- ✓ 『화생방재난시 이것만이 살길이다』 DVD 상영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 화생방재난 대비 시민안전을 위한 자치구별 홍보활동 강화

- 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TV, 반상회보 및 다중집합 장소 VTR방영을 통한 주민홍보
- 자치구 홈페이지에 화생방 정보제공, 사이버홍보 강화

마. 민방위 경보체계 개선

2015년 중점 추진계획

❖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및 도심지 경보난청지역 해소

- 도심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보난청지역 해소(2개소 신설)
- 비상상황 발생시 시민안전과 신속히 전파를 위해 상시 24시간 상황유지와 일일 10회 이상 시험발령 통해 안정적인 경보시스템 상태유지

❖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개선

- 대규모 정전, 방사능 누출 및 지진발생 대비한 「선 경보발령, 후보고」 경보체계 개선 (※ 민방위 경보발령·전달규정 개정, 13년도)

▶▶▶ 2014년 추진사항

▶ 민방위경보·발령 전달체계 확립

- 민방공상황 발생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직접 전국 동시 사이렌 취명
- 재난상황 발생시 시장 및 구청장이 사이렌 취명(재난경계,재난위험 경보)

▶ 민방위경보시설 현황

(14.12.16현재)

구 분	통제소 통제장비	사이렌
시설수	1식	서울시 169개소 (중구 6개소)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 24시간 경보상황실 운영 및 일일 시험 확행

-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3~4명) 5교대 근무실시
- 중앙통제소 1일 6회 및 자체경보발령 1일 4회 시험 실시
-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확립 및 실제 경보상황 대처 철저

○ 경보시설 방호 및 보안관리 강화

- 통제소, 사이렌 단말 보호구역 지정 및 단말기 잠금 상태 유지
- 경보통제소 CCTV 설치를 통한 주변감시 강화
- 구 경보전달책임자 및 동 사이렌담당자 지정 운영
- 출입자 통제 및 보안점검 기록유지

□ 민방위경보발령·전달체계 확립

○ 민방공상황 발생시 : 공습(과상음 3분)·경계경보(평탄음 1분)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전국 동시 사이렌 발령

○ 재난 발생시 : 재난경계(음성방송)·재난위험경보

-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접경지역 읍·면·동장이 사이렌 발령

○ 민방위 경보방송 전달체계 확대 추진

- 공중파 방송외에 다양한 유료방송(유선방송, IPTV, 위성방송) 확대 추진

□ 도심지 경보사각지역 해소 및 노후 민방위경보사이렌 교체

○ 도심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보난청지역 해소

- 경보 난청지역 경보사이렌 2개소 신설

○ 노후된 경보사이렌의 성능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경보시스템 상태유지

- 노후 경보사이렌 6개소 교체

□ 민방위경보시설 운영능력 함양 및 관리강화

○ 유관기관 간 민방공 경보발령 합동훈련 월 1회 실시

- 적 항공기, 미사일 공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민방공 경보 발령 합동훈련 실시(월1회)

○ 경보담당 공무원 기술교육 및 경보장비 점검·정비 철저

- 전문기술자 및 자체적으로 경보장비의 운영 및 장애처리 등
- 경보시설 월1회 자체 정기점검 및 필요시 특별점검 실시

※ 통신장비, 앰프, 전원부, 배터리 등 동작상태 전반점검

□ 민방위경보시설 비상시 복구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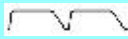

○ 경보장비 장애 대비 복구체계 확립

- ✓ 경보장비 장애발생시 근무자 응급조치, 예비품 확보 운영
- ✓ 정전시 경보상황실 UPS에 의해 2시간 시스템 작동 가능
- ✓ 정전시 경보사이렌 백업 밧데리에 의해 5회 경보발령 가능
- ✓ 유지보수 전문업체 월 1회 이상 순회정비 및 야간 합동근무 실시
- ✓ 주·야 전용회선 고장에 대비, KT측과 24시간 상시연락체계 유지

※ 경보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업체 유지보수 용역 시행

□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 행정자치부예규 제414호('12.7.10)

경보종류		민 방 공 경 보				재 난 경 보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 경보	경보 해제	재난 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 난 경보해제
방 송 매 체	라디오	사이렌 +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음성방송	음성방송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음성방송
	TV, DMB, CBS	문자방송						
단 말 시 설	경보단말 (사이렌)	사이렌 평탄음(1분)	사이렌 파상음(3분)  주기:5초상승, 3초하강(8초) 반복:22회(3분)	음성방송		음성방송	사이렌 파상음(3분)  주기:2초상승, 2초하강(4초) 반복:45회(3분)	
		옥내·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음성방송(반복)			

3 민방위사태대비 정예 민방위 구현

가. 민방위의 날 훈련 실효성 강화

2015년 중점 추진계획

❖ 2015년도 서울시 민방위훈련 계획

- 총 8회 실시 : 민방공대피훈련 2회, 재난대비훈련 2회 ,
지역특성화훈련 및 직장대자체방호훈련 3회
-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민방공, 재난대비훈련 연중 실시
- 군,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실전대응 합동훈련 실시

❖ 「지진 및 대형화재 등 위기사태대응 훈련 실시

- 재난대비 훈련, 생활속 민방위훈련 및 실전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 2014년 추진사항

- ▶ 테러, 화재방 등 국가비상사태 대응역량 강화
- ▶ 실질적 재난훈련을 통한 재난대비태세 확립

(14.10.31현재)

훈련 구분	횟수	시 기	대상지역	훈 련 중 점
1. 민방공대피훈련	연2회			
- 전국동시 민방공 대피훈련	1회	3월	전국 동시실시	경보전파 시민대피 및 교통통제
- 전국동시 민방공 대피훈련	1회	7월	전국 동시실시	야간등화관제 훈련예정
2. 재난대비훈련	연1회			
- 전국단위 재난대비훈련	1회	10월	전국 동시실시	지진대비 대피훈련 (안전한국훈련과 연계)
3. 민방위의 날 훈련	연3회			
- 민방위 화재대피 훈련	1회	6월	전국 동시실시	전시민 자율참여 화재대피훈련
- 지역특성화 훈련	1회	10월	25개 치구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과제훈련
- 복합재난 대비 훈련	1회	10월	시주관	취약지역 복합재난대비훈련

□ 민방위 훈련 내실화

- 공공부문 : 실전 같은 훈련 → 실전 대응능력 향상, 시민 참여분위기 조성
- 일반시민 : 경보전달, TV·라디오 등 홍보 → 행동요령 등 정보제공, 자율참여 유도

비상차로확보·실제대피

- 민방위대원 중심
- 목적 있는 훈련
- 시민 참여 홍보
- 시민행동 유도



비상대비계획 실제가동

- 민·관·군·경 합동
- 실전 같은 훈련
- 시민 참여분위기 조성
- 시민들에게 정보제공



민방위 훈련 강화

- 사태별 대응훈련 표준모델 정착
- 민방위공감대 확산 및 홍보강화
- 공동협력체계확립→역할분담체계 정착

□ 추진방향

- 테러, 화재방 등 국가비상사태별 표준모델에 의한 실전훈련 실시
 - 공습경보 발령 후 즉시 차량 갓길 정차
 - 전 시민 생명지키는 대피소 가보기 운동 전개
- 실질적 재난훈련을 통한 재난대비 태세 확립
 - 민·관·군·경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위기사태별 실전대응력 향상

〈구체적인 실현 추진계획〉

- 테러 등 국가비상사태 대응역량 강화
 - 전 시민 생명지키는 대피소 가보기 운동 전개 실시
 - 공습경보 발령 후 즉시 차량 갓길 정차 및 비상차로확보 실제훈련
- 적극적인 훈련참여 유도를 위해 IT 및 멀티미디어 홍보 강화
 - TV스팟 및 QR코드, 서울안전지킴이, 인터넷포털 등 홍보 실시
 - APT단지, 상가, 다중집합장소 등 안내방송 및 전단지, 전광판, 사전집중 홍보 실시
- 전시 임무에 맞는 민·관·군·경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확립
 - 군은 작전계획, 경찰은 치안계획 등에 따라 시민대피 및 교통통제

□ 지역·분야·시기별 특성화된 훈련 연중 실시

- 훈련 요소간 지휘체계 확립 및 임무 역할 강화(전국단위)
 - 최근 국가안보상황을 감안 민방공훈련 강화(2회)
 - ※ 민방공 대피훈련(3월), 야간등화관제 훈련(7월)
 - 매월 15일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로 '15일 = 민방위 훈련' 인식 정착
- 매월 시의성 테마를 선정하여 재난부서와 합동훈련
 - ※ 테마별 재난 훈련시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이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산불, 지하철 사고, 대형화재, 화학물질 유출, 가스유출, 유류유출, 원전사고, 건물붕괴 등)

〈 2015년도 서울시 훈련계획 〉

월별	훈련 분야	훈련 내용	비고
3월	민방공 대피	· 경보전파, 시민대피, 차량통제	전국동시
4월	지역 특성화 훈련	· 지역특성에 맞는 훈련과제 선정	자치구
5월	재난대비 훈련	· 지진대비 훈련, 시민대피, 차량통제	전국동시
6월	직장대자책방호훈련	· 민방공·재난대비훈련(테러 등) 취약지역 복합재난대비훈련	자치구
7월	민방공 대피	· 야간등화관계 훈련	전국동시
9월	지역 특성화 훈련	· 지역특성에 맞는 훈련과제 선정	전국동시
10월	재난대비 훈련	· 지진대비 훈련, 시민대피, 차량통제	전국동시
11월	지하철안전사고대비 훈련	· 테러화재 등 지하철 안전사고대비훈련	지하철공사

□ 2015년도 세부훈련 추진사항

- 민방공 대피훈련 : 3월, 8월
 - 훈련장소 : 대피 시범훈련이 가능한 장소 자치구별 1개소 선정 추진
 - 다중이용시설 : 학교시설, 백화점 등
- 재난대비훈련
 - 지진 등 안전사고 대비 훈련 : 5월, 10월
 - 다중집합장소(학교, 백화점, 대형마트, 공공 청사 등)
 - 유독가스(염소가스, 암모니아가스 등) 생산업체·사용업소 등
중점훈련장소 자치구별 1개소 선정 추진
-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훈련 실시
 - 지역주민 및 민방위대원의 주도적 훈련 수행

- 자치구단위 지역 및 직장대 취약지역을 고려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 훈련 실시
 - ※ 테마별 재난 훈련시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이 각종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산불, 철도사고, 대형화재, 화학물질 유출, 가스유출, 원전사고, 건물붕괴 등)

□ 유관기관별 전담체제 확립 및 민간기업(직장대) 참여 확대

- 민방위훈련 시 교통통제는 전시 치안계획 및 작전계획에 의거, 군과 경찰 전담체제 정착

[민·관·군·경 협력 체계]

구 분	비상대비계획	주 요 임 무
• 군(예비군)	⇒ • 작전계획	⇒ • 군 작전로 확보 통제
• 경 찰	⇒ • 치안계획	⇒ • 주요도로 교통통제 전담
• 행정공무원 민방위대원	⇒ • 주민 및 차량 통제계획	⇒ • 골목길 통제 및 도로변 주민대피 유도 전담

- 대기업 등 직장민방위대원, 여성민방위대원, 지원민방위대원 등 기존 의무민방위대원 이외의 지원인력 적극 참여 유도 병행
- 전 시민 민방위훈련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 직장민방위대를 중심으로 기업·직장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 업체별로 비상계획관을 통한 훈련 목적·방법·행동요령 사전교육 및 전 직원 대피
- 입간판 설치, 민방위기 게양, 홈페이지 Pop-Up, 전광판, 게시판, 직원조회, 안내방송 등 훈련 분위기 조성
 - ➔ 자치구에서는 소관 직장대에 「민방위교육 및 훈련」, 「민방위시설장비」 확보 등 통보, 협조체계 유지

- 건물주·시설주에게 자체 민방위훈련 실시기회 부여(민방공 대피훈련시)
 - 민방위비상대피시설로 지정된 건물주 및 시설주 대상

□ 청소년 안보교육 등 학교훈련 운영

- 유관기관(지역교육청, 학교장)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학교 학사운영 계획에 민방위 교육시간 반영
 - 학교단위 훈련장소 제공, 평가시 훈련 실적 반영
- 서울시↔서울시교육청↔수도방위사령부 협의 청소년안보교육 집중 시행 추진
- 지역 재난대비훈련에 학생참여 및 참관 적극 권장
- 평시 생활민방위 의식제고 및 체험활동 전개
 - 서울시 『민방위실전체험 훈련장(광진구 구의3동)』, 『서울민방위교육장(성북구 석관동)』, 영등포교육장을 안전사고 예방 및 체험교육훈련장으로 활용

□ 홍보 강화로 시민들의 자발적 훈련참여 분위기 조성

- IT 기술 및 멀티미디어 활용 등 적극적 홍보
 - 서울안전지킴이 모바일, 인터넷 포털, 카카오 톡, 페이스북, 유튜브 등
 - TV스팟(3사:KBS, MBC, SBS) 및 QR코드등 영상홍보
- TV(스팟 및 자막방송 등) 사전홍보 강화
- 라디오 실황중계, 관계기관 공동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아파트단지, 건물별 민방위훈련 안내방송 및 경보전달
 - 전단 등 주민대피 홍보물 제작·배포
- 지하철 및 버스내 훈련 홍보 및 안내

나. 민방위대 동원태세 확립

2015년 중점 추진계획

❖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른 「민방위사태 개념」

민방위기본법 개정 제1조 ('12.2.22)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 제2조(정의) “민방위사태”란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 민방위대원의 보상·치료 및 실비변상

■ 보상 및 치료

-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자와 사망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치료

■ 재해 등 보상

-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자는 재해보상금(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치료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은 휴업보상금 지급
-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실비변상 등

- 동원된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급식과 실비(식비·숙박료·교통비) 지급
- 중장비 등의 기계 기구를 동원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지급

□ 민방위대 동원매뉴얼 정비

- 국지전, 재난 등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대비하여 민방위대 동원 매뉴얼 정비 추진
- 민방위사태에 따른 동원 발령 시 유관기관 정비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민방위대원 교육 시 동원중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

□ 민방위대 동원근거 및 요건

- 동원근거(민방위기본법 제26조)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 동원요건(민방위시행규칙 제41조)

- ✓ 전면전·국지전·공습·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 ✓ 무장공비의 기습·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확보가 곤란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 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민방위 대원의 동원이 필요할 때
- ✓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 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 ✓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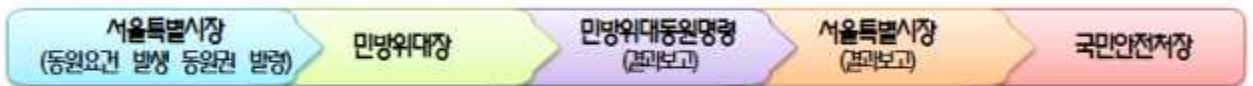
□ 동원발령권자 지역범위 및 동원 절차

- 국가 ⇒ 국민안전처장, 지방 ⇒ 자치단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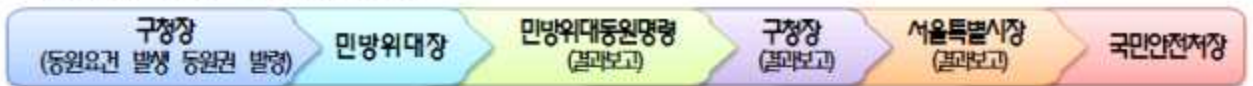
국민안전처장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동장
·전국 2개 이상 시·도의 민방위사태 발생시	·서울시 관내 2개이상 자치구의 민방위사태 발생시	·자치구 관할지역 내의 전체 또는 일부 민방위사태 발생시	·동 관할지역 내의 전체 또는 일부 민방위사태 발생시
※ 동원권자가 보상 및 비용부담 주체			

- 자치단체장 동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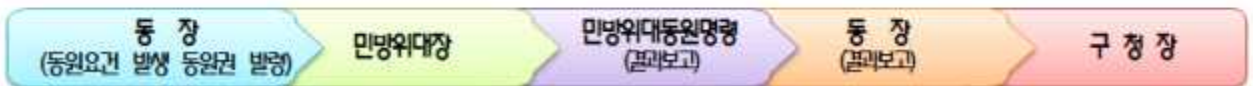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장이 동원권을 발령하는 경우



➢ 구청장이 동원권을 발령하는 경우



➢ 동장이 동원권을 발령하는 경우(응급조치의 경우만 가능)



- 동원 단계별 처리내용 : “별첨”

○ 동원의 지역범위

- 거주지 시·구 관내를 원칙으로 함

※ 필요한 경우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1일 작업권내에 속할 때에는 해당 민방위대 동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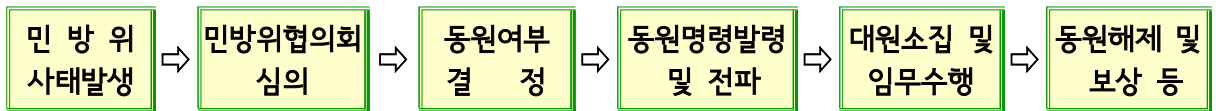
□ 동원절차

① 민방위 사태 발생 보고

보고 체계	· 민방위대장 ⇨ 동 장 ⇨ 구 청 장 ⇨ 시 장 ⇨ 국민안전처장
보고 사항	· 발생일시, 장소, 발생상황, 확대전망, 처리 또는 진압대책, 동원에 필요한 사항 등
보고 방법	· 서면보고
보고 시기	·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지체없이

② 동원령 발령방법

○ 발령체계



○ 동원여부 결정

-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걸쳐 결정
-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심의생략

○ 동원명령 발령

- 동원권자는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동원중의 행동요령을 명시하여 동원대상 민방위대장에게 동원명령 발령 및 전파
- 즉시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 구, 동의 게시판에 공고
- 다만 국가 안전보장상 특히 필요하거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공고 생략

○ 동원을 위한 소집 수단(민방위대장이 할 일)

- 싸이렌, 타종, 경적, 신호기, -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 전달
- 확성기(마이크 또는 앰프 등)를 이용한 방송 및 공고, - 서면에 의한 개별 통지

③ 동원결과 조치

- 동원명령을 받은 각급 민방위대장은 지체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전 대원을 동원하고 결과보고
- 동원결과 보고체계 : 민방위대장 → 동장 → 구청장 → 시장 → 국민안전처장

④ 동원 민방위대의 주요업무

- 정보망을 통한 민방위사태의 신속한 전파 및 시민대피
- 사건·사고 현장에의 시민 출입통제 등 질서유지
- 인명구조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지원
- 피해시설물의 응급복구
- 구호활동 지원
 - 재난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구조물품 수요 및 실태조사 지원활동
 - 응급구호지원 물품의 지급 및 수송관리 지원활동 등

⑤ 민방위대 동원 시 보상기준 등 (법 제28조의3항 및 시행령 제38조의1항)

- 구호활동 지원

종 류		보 상 요 건	지 급 기 준	부담주체
재 해 보 상 금	사망 보상 금	·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사망한 때	·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 산업체 월평균 임금총액의 36배 상당액 (사망 전년도 기준)	·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시군구가 부담주체 일 경우 시·도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음)
	장애 보상 금	·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때	· 시행령 [별표1]의 장애등급에 따른 별표 2의 금액 ※ 사망보상금의 6/12~12/12	
휴 업 보 상 금	·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가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때	·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 및 농가 가계비 평균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日割 계산한 금액에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원시 실비지급

(단위 : 원)

구 분	식비(1일당)	숙박료(1일당)	교 통 비			
			철 도	선 박	항 공	자 동 차
지 급 액	20,000	30,000	일반실 운임정액	2등급 운임정액	2등 운임정액	정 액

< 별첨 >

동원 단계별 처리내용

단계별	처리기관	처 리 내 용	비고
① 동원요건	법 제26조1항	○ <u>민방위사태</u> 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시행규칙 제41조	○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u>국가동원령</u> 을 발하였을 때 ○ <u>자연재난</u> 이나 <u>인위적 재난</u> 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② 민방위사태 발생 보고	시·군·구	○ 시·군·구→시·도→국민안전처장	
③ “동원권자”의 동원요인 진단 (법 제9조) (규칙 제41조)	국민안전처 (시행령 제3조)	○ 동원권 발령 여부 판단(협의회 심의) ○ 동원권 발령 시 중앙민방위협의회 개최 - 동원권 발령 여부, 동원규모 등 ※ 긴급 시 협의회 생략 가능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행규칙 제2조)	○ 동원권 발령 여부 판단(협의회 심의) ○ 동원권 발령 시 지역민방위협의회 개최 - 민방위대원 임무와 역할, 동원 규모 등 ※ 긴급 시 협의회 생략 가능	
④ 동원권 발령 (법 제26조)	국민안전처, 시·도·시·군·구	○ 발령권자 : 국민안전처장 및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긴급시 읍·면·동장)	
⑤ 동원령 전파 (시행령 제35조)	민방위대장 (통·리)	○ 전파방법 - 지역방송 및 마을방송, 사이렌 등 - 비상연락망 및 동원명령통지서에 의한 개별 전달 ○ 전달체계 : 발령권자→읍·면·동장 →지역민방위대장→대원	

단계 별	처리기관	처 리 내 용	비고
⑥ 사태수습통제 지휘소 설치·운영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태수습 통제 및 지휘, 민방위대별 임무부여 ○ 동원인력 보강 여부 판단 및 요청 (통제 지휘단장 → 동원권 발령자) ○ 자재, 장비, 취사 등 지원 ○ 부상자 가료 및 후송, 이재민 긴급구호 등 종합대책 마련 ○ 인근 민방위대 응원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 사태의 급박 및 수습능력 부족 - 범위 : 동원권자 관할 지역범위 내 - 요청경로 : 통제단장(민방위대장) →인근지역 민방위대장 - 절차 : 구두(사후 서면 제출) - 응원을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읍·면·동장(시·군·구청장)에게 보고 	
⑦ 동원 집결지	통제지휘소 (읍·면·동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소인원 점검 : 지역민방위대장 →읍·면·동장에게 보고 ○ 대원별 임무부여 및 민방위 장비 배부 ○ 대원의 행동요령 및 유의사항 교육 ○ 미 응소대원에 대한 동원명령통지서 전달 	
⑧ 대원 임무수행	민방위대장 및 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원 단독행동을 자제하고 2~3인 이상 집단 활동 ○ 통제지휘소(본부)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임무수행 중 특이사항 즉시 보고 	
⑨ 의료기관지정 및 사상자 후송	동원권자 통제지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발생 시 신속히 인근 의료기관 후송 ○ 의료기관 지정 : 부상자 가료 신청→ 읍·면·동장→시·군·구청장(의료기관) ○ 부상자(또는 유가족)에게 보상 또는 가료 신청 안내 	
⑩ 사상자 파악보고	민방위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악대상 : 동원 활동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보고체계 : 민방위대장 → 읍·면·동장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국민안전처장 	

다. 민방위대 검열 내실화

2015년 중점 추진계획

❖ 민방위대 검열 개요

- 검열 목적
 - 평소 민방위대 편성, 교육훈련, 시설·장비 등 민방위 전반에 대한 현황과 운영실태 검열을 통해 비상시 인적·물적자원 동원 준비 태세 유지

▪ 민방위대 검열 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2조(검열)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검열)
- 민방위대 검열규정

▪ 검열 구분

- 특별검열 : 필요시 국민안전처장, 시·도지사 실시
- 정기검열 : 시장·군수·구청장 실시

❖ 주요 검열내용

- 민방위대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장비 현황 등

▶▶▶ 2014년 추진사항

- ▶ 기 간 : 2014. 5. 2 ~ 2014. 6. 3 (14일간)
- ▶ 대 상 : 총 75대 (지역대 50, 직장대 25)
- ▶ 검열결과

계	우 수 대	보 통 대	경 고 대	재검열대
75개대	직장 4개대	71개대 (지역 50, 직장 21)	-	-

□ 민방위대 대응태세 검열 강화

- 매년 민방위대 운영 전반에 대해 정기검열 추진 (구청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4월말까지 실시 (지역·직장민방위대)
 - 200인 이상 직장민방위대 합동 검열
- 정기검열 실시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특별검열 실시 (국민안전처장, 시장)
 - 정기검열 실시 결과 운영 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경우
 - 민방위시책의 발전을 위해서 직접 검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구 민방위대 현황 ('14. 12. 31 기준)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379개대/21,474명	247개대/8,541명	131개대/12,862명	1개대/71명

검열기관 선정기준

- 신설기업체 등 신규편성 민방위대 / 재난 및 안보 취약지역 민방위대
- 과거 검열결과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민방위대
- 기타 검열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방위대를 대상으로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적의 선정

검열방법

- 검열요령
 - 검열목적, 선정, 검열방법설명 및 현황청취
 - 자료조사 및 분석 : 필요시 자체 감사부서 활용
 - 평정요소별 점검 / 의견청취 / 건의사항 수렴 / 강 평
- 검열결과 평정

· 최우수(4점) :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타 민방위대에 보급할 수 있는 자체적인 창안사항이 있을 때
· 우 수(3점) :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때
· 보 통(2점) :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미흡하나 현지 교정으로 시정이 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 미 흡(1점) : 민방위대 운영실태가 현저히 불량할 때

- 검열결과
 - 미흡한 사항은 현지시정 및 재검열 등 검열결과 ⇒ 서울시 보고

우수 민방위대 인센티브 확대

- 우수 사례 전파 및 선도 민방위대로 육성
 - ※ 미흡 민방위대에 대해 시정조치요구 및 재검열 실시
- 검열 우수 민방위대 차년도 검열 제외, 우수 민방위대 및 대원·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확대 추진
 - ※ 검열 우수 유공 포상(시장·구청장)은 매년 민방위 창립기념일에 맞추어 실시

제도개선 및 전파

- 검열결과 미흡한 사항 : 시정조치 및 소방방재청 건의
- 검열결과 우수사례 : 각 자치구에 홍보 및 지역·직장민방위대 횡단 전개

라. 주민신고체계 확립

2015년 중점 추진계획

❖ 주민신고망 관리 및 이동·고정 신고원 정예화

- 2015년도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및 보강 추진
 - 정기정비(6월, 12월) 및 수시정비
- 신고원(이동·고정) 정예화 추진
 - 이동신고원(동단위로 10~20명 구성), 고정신고원(서비스업종 종사원)

▶▶▶ 2014년 추진사항

- ▶ 주민신고원 정기정비 : 6월(14.6.1 ~ 6.30)
 -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신고망 정비·보완, 부적합 신고원 교체
(14.12.31 기준)

기본신고망	특별관리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297	5	100	174
통, 직장, 공동생활권역 단위	군·경 지정 대공취약지역	집배원, 환경미화원, 운전원, 청원경찰 등	요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종사원 등

※ 통·반장 중 반장은 주민신고 기본망에서 제외

□ 주민신고망 운영방향 및 관리

- 주민신고망 현황관리 철저, 효율적인 신고관리체제 확립
- 주민신고원 정예화 및 주민신고 동기유발 여건 확충
- 신고자에 대한 표창, 보상금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 국방부,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설정 운영
- 언론·방송사와 협조, 홍보활동 지속 전개

주민신고망 연혁 및 필요성

- 민방위대 창설과 함께 민방위대 임무로 국민 신고망 구성 운용('75. 10)
- 군·경·예비군 등 다원화된 신고망을 행정안전부로 통합 일원화('82. 1)
 - ▶ 주민신고의 필요성
 - 민방위교육 및 재난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
 - 민방위 실전훈련 강사 연구강의 시범

□ 주민신고망 관리 및 신고원 정예화

○ 주민신고망 현황 관리 철저

- 주민신고망 정비·보강(시 지도하에 자치구별 실시)
 - 정비기간 : 정기정비(15년 6월, 12월) 및 수시정비
- 지역특성에 맞는 신고망 구성·운영
- 군·경 협조를 위한 특별관리망 운영
- 신고원 평소관리 강화
 - 신고원 위촉행사 개최, 교육·훈련 및 격려, 활동실적 점검 등

○ 이동·고정신고원의 정예화

〈이동신고원〉

- 위촉권자 : 자치구청장
- 구 성 : 동단위로 10~20명 이내 구성
- 대 상 : 투철한 국가관과 책임감·사명감이 있는 자 중 현지실정과 지리에 밝은자
- 역 할 : 거동수상자, 각종 범죄자, 민방위사태, 기초질서 저해사범 등의 신고 및 주민계도
- 관리 및 운용
 - 기관장 표창, 격려금 지급 및 기념품 증정 등 인센티브 부여
 - 년 1회 이상 간담회 개최 및 행사지원 격려
 - 분기 1회 이상 소속기관·단체장 교육·홍보
 - 주민신고 홍보물, 신고요령 책자, 전단 등 제작 배포

〈고정신고원〉

- 대 상 : 서비스업종 종사원으로 투철한 국가관과 책임감·사명감이 있는 자
- 위촉권자 및 역할 : 이동신고원과 동일
- 관리 및 운용 : 수혜 및 행정편의 제공 등

□ 주민신고 홍보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

- 시 기 : 2015년 6월중(10일간)
- 주 관 : 시, 자치구
 - ※ 협조 : 국가정보원,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 주요내용: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주민신고망 점검·정비 및 각종 행사 개최 등 주민신고 생활화 분위기 조성

○ 주민신고 홍보 강화 및 신고의식 고취

- ✓ 마스크를 통한 대국민 홍보(TV 및 지역방송 자막이용)
- ✓ 반상회 등 주민 모임시 신고대상 및 요령 등 홍보
- ✓ 각종 주민신고 홍보물 및 신고정보 우선 전파
- ✓ 각급 사회교육, 학교교육 등을 통한 신고의식 고취
- ✓ 주민신고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방안의 실효성 강화
- ✓ 신고의 간소화 및 정확성 제고
 - 우수신고자에 대한 포상홍보를 통해 신고정확성 유도
- ✓ 대공 등 국가안보 관련 신고의 적극 장려
- ✓ 지역실정별 특정 신고대상 신고 및 신고방안 개발
 - 해안지역 : 대공 신고 및 불법 밀입국 관련 신고 방안
 - 내륙 산간지역 : 산불 및 홍수 등 자연재해 관련 신고 방안

○ 주민신고 접수·처리 현황 관리 철저

- 주민신고 대상별 신고처리 결과 기록 유지
- 대공 관련사항은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도 관리

○ 주민신고자 인센티브 제공

- 우수신고자 표창, 기관장초청 간담회, 단합행사 및 모범지역 견학지원 등 사기 앙양책 강구

주민신고망 운영 대표사례

- '03년 동해안 전마선 귀순 월경 신고(특별신고원 : 어민)
- '98년 목호 진동 해변가 무장간첩 변사체 신고(고정신고원 : 통장)
- '96년 동해안 잠수정 침투 신고(이동신고원 : 택시기사)

〈 신고대상 예시 〉

- ▶ 국가 안보 관련 위험 신고
 - 군사시설 등 주요시설 주변에서 이유 없이 배회하는 자
 - 일정한 직업 없이 장기간 특정장소에 기거하며 밀입국 등을 주선하는 자
 - 은연중 국가비방과 체제 비판을 조직적으로 일삼는 자
 - 계급의식을 고취하며 공공연하게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자
 - 공산주의 사상 및 북한의 통일노선 등을 은밀히 찬양하는 자
- ▶ 각종 재난 등 국민생활환경 위험 신고
 - 호우시 축대, 담장, 벽체, 제방 등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
 - 제방·침식·유실 등으로 붕괴 또는 제방이 넘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각종 조난사고 및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마. 혈액공급 지원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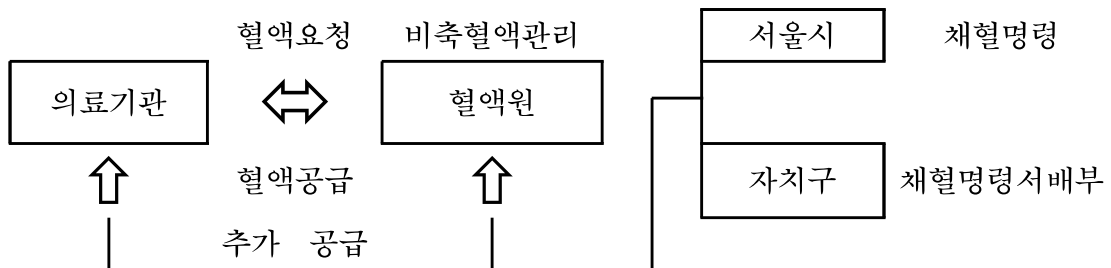
운영상황

■ 재난시 혈액수급 기본방침

- 혈액공급은 중상자에 한하여 사용함
- 중상자 1인당 혈액은 4유니트 수혈원칙
(※ 비축 혈액제제, 수액제제이며, 1유니트는 320~400cc 임)
- 혈액공급 부족 시 채혈 불능자 등을 감안 소요대비 최소 130% 수준의 채혈 명부 관리
-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하여 비축된 채혈뺨 관리 철저
(서울시 채혈뺨 확보량 33,664개)

■ 혈액수급체계

- 관련기관 : 서울시, 자치구, 적십자혈액원 및 의료기관



■ 혈액 비축량

- 서울시 확보량(비축량) : 40,542유니트(중구 : 539유니트)
- 서울시 채혈 예상(가능)량 : 최대 1,007,332 유니트(중구 : 13,310유니트)

□ 채혈반 운영 및 수급 관련 조치

- 채혈반 설치 및 자치구 관련
 - 혈액공급 부족 시 혈액원 당 1개반 편성(유사시 종합병원 임시채혈반 증편)

- 헌혈차를 보유한 기존 혈액원은 이동채혈반을 별도 설치·운영
 - 구청장은 지역 내 혈액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여 해당 혈액원에 실시간 전파
 - 보건소에서 임시혈액원을 설치운영 가능
- 채혈명령서 : 시장(구청장·동장 협조)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 하에서 발함
- 혈액원 또는 임시혈액원에서 채혈 실시
 - 혈액원 설치 계획

구분	계	기존 혈액원	임시혈액원				예비 혈액원 (보건소)
			소계	병원	보건소	이동 채혈반	
서울시	210	81	129	73	25	31	0
중구	10	5	5	3	1	1	

- 채혈대상자는 17세이상 60세 이하로서 남성은 체중50kg이상, 여성은 45kg 이상인 건강한 국민으로 한다.
- 채혈반 편성기준

구 분	고정채혈반	이동채혈반	비 고
계	4	5	
의 사	1	1	
간 호 사	2	2	
임상병리사	1	1	
운 전 기 사	-	1	

- 채혈명령에 의거 채혈하는 혈액원(임시혈액원 포함)장은 채혈자에게 채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군소요 혈액확보에 인원, 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각 지역 군사령관 등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단계별 위기경보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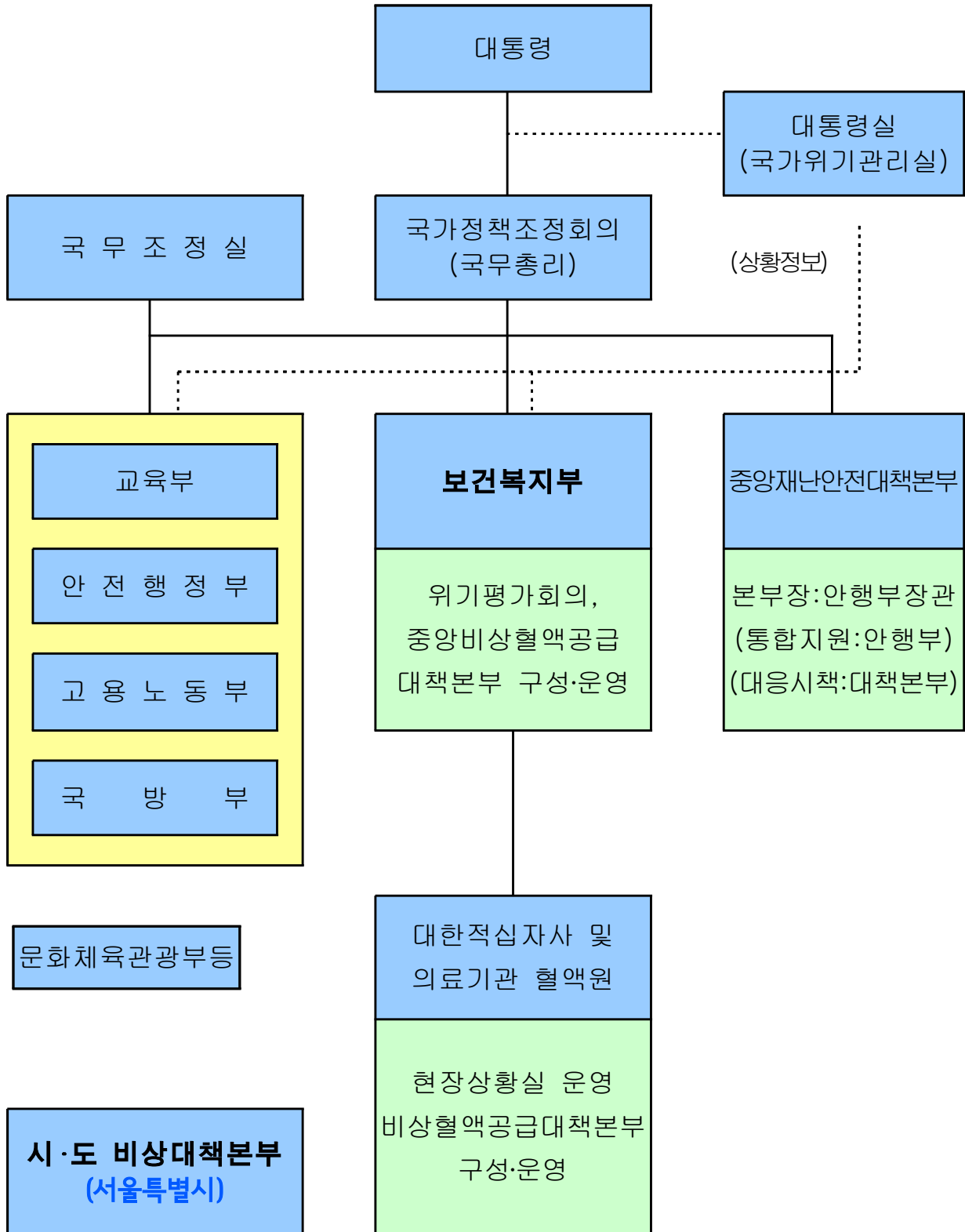
○ 위기관리 대비활동에서 적용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심 (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 단체의 집회, 기자회견 등 실시 ○ 혈액원 파업예고 및 신종감염병 등 일부국가 발생 등 ○ 정전, 화재 등 대비 주요시설 상시점검 결과 필수업무 차질 발생 등 ○ 혈액수급 부분적 부족 징후(적정 재고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적혈구 5일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징후활동 감시 -혈액재고상황 파악 -협조체계 점검 -초기대응반 설치
주의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원 지부별 파업 전개 ○ 신종감염병 등 국내 확산 ○ 정전, 화재 등으로 필수업무 70% 가동 ○ 혈액수급 부분적 부족(적정 재고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적혈구 3일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수집 및 정보 공유 활동 강화 -협조체제 가동 -혈액비상수급계획 수립 시행 -상황대응반 설치
경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원 파업규모 확대 ○ 신종감염병 등 전세계 확산 추세 ○ 정전, 화재 등으로 필수업무 50% 가동 ○ 혈액수급 부족 확대(적정 재고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적혈구 2일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혈액비상공급체계 가동 -혈액원 운영확대 -중앙비상혈액공급 대책본부 설치
심각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원 총파업(필수업무 70%유지) ○ 신종감염병 등 전세계 확산 ○ 정전, 화재 등으로 필수업무 30% 가동 ○ 전국적 규모의 혈액수급 상황 악화(적정 재고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적혈구 1일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혈액비상공급체계 강화 -의료기관혈액원 운영확대 -중앙비상혈액공급 대책본부 설치

□ 기관별 주요 임무역할

구 분	기 능	비고
안전행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의 장에게 행·재정상 조치 및 협조요청 - 중앙비상혈액공급대책본부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비상혈액공급대책본부 설치운영(총괄반, 혈액공급대책반 등) ○ 혈액수급 통합관리 ○ 시·도 비상혈액공급대책반 운영실태 확인·점검 등 ○ 위기경보 수준별 및 위기 형태별로 헌혈의집 운영시간 연장 조치 등 혈액수급 비상대책 마련 시행 ○ 위기경보 수준 및 위기 형태별 대책에 대한 대국민 헌혈 홍보 	주관 기관
소방방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환자 이송 및 재난방송 위기상황 전파 지원, 긴급혈액 이송지원(헬기 등) 	유관 기관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책본부 설치 가동 	

□ 기관별 주 종합체계도



바. 응급의료 지원대책

운영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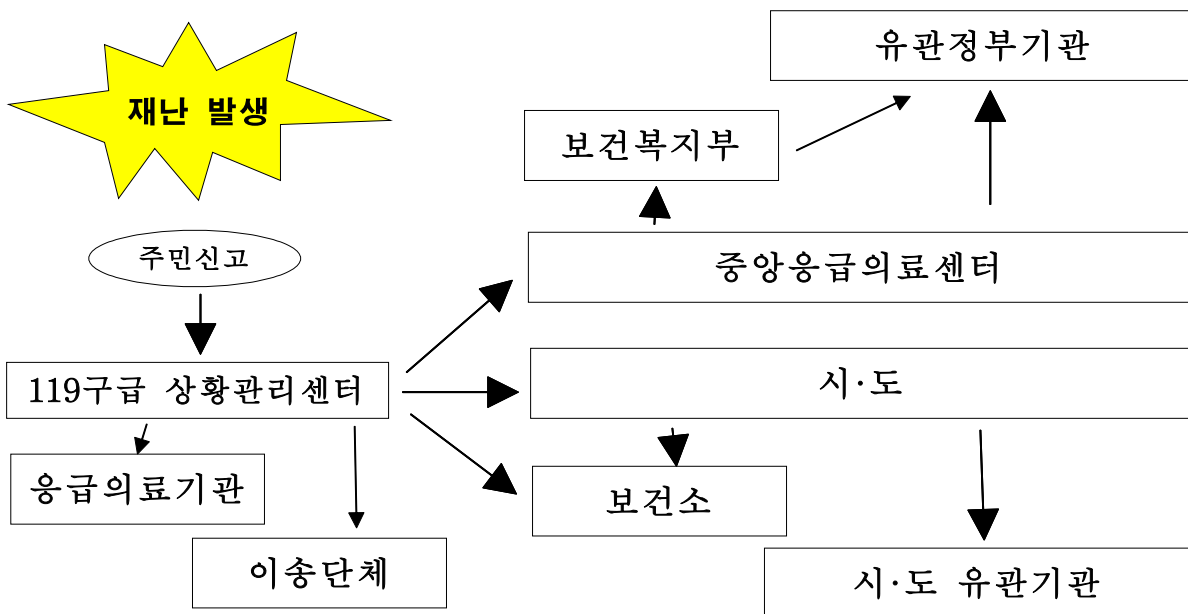
❖ 2015년 중점 추진사항

- 다수환자 발생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등 의료지원체계 유지
-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의료지원단 대량재해 교육
- 재난대비 응급의료 장비 비축 (Go-bag : 보건소별 4~5개 보유토록 지원)
- 신속한 의료지원 전개를 위한 응급의료기관간 전달체계 구축·운영

□ 신속한 상황전파 및 전파체계 유지

- 신속한 상황접수 및 전파체계

구분	주요내용	해 당 기 관			
1단계	최초신고	일반인 등			
2단계	최초 상황접수	소방 경찰 등			
3단계	상황과악 및 전파	119(소방)	⇔ 협조 및 정보공유	⇔	보 건 소 (보건소장 및 지역 DMAT 등)
4단계	상황전파 및 보고	중앙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 ↓ 관계부처(협조)	관내응급의료기관 및 이송업체	서울시 ↓ 이동응급의료세트 배치기관 ↓ 현장응급의료지원단	관내 유관기관



○ 기관별 역할

기관	소속	역할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국가단위 재난의료 총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 의료센터	- 재난의료지원팀 파견 - 재난의료지원계획 수립지원
시도	보건과	- 상황전파 및 보고 - 시도 재난의료 총괄
지역 응급의료 정보센터		- 병상정보 및 진료가능정보 파악 - 환자 이송현황 파악
시군구	관할 보건소	- 상황전파 및 보고,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인근 보건소	- 재난의료지원팀 파견
현장 응급의료소	현장 응급 의료소장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휘감독 - 유관기관과 연계체계 유지
	중증도 분류반	- 환자별 중증도 분류표를 작성 및 부착 - 환자 사진촬영 및 기록 - 중증도 분류결과에 따라 응급처치반 또는 이송반에 환자 인계조치
	응급처치반	- 중증도 분류결과에 응급처치 실시 - 응급처치 후 귀가 또는 이송관정 조치 - 중증도 분류표에 응급처치 내역 및 이송요청사항 기록 - 의료물품, 장비 등 자원현황 파악 및 공급 - 소장에게 환자현황 보고 및 필요시 추가지원 요청
	이송반	- 중증도 분류표의 이송기록 작성 - 해당 정보센터에 의뢰하여 관할구역 내 응급의료 자원현황 및 적절 이송병원 확인 및 이송(현장지휘 소와 협의하여 119구급대 적극 활용) - 환자별 이송현황 기록유지 및 상황보고
	행정지원반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가동 - 현장응급의료소 반별 요청사항 파악 보고 및 운영지원 - 환자통계 및 상황관 관리, 현장지휘소와 연락체계 유지 - 언론, 보호자 등 외부요청에 대한 정보제고 및 처리
소방방재청	관할소방서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 긴급구조대 진입로 확보 - 현장주변 차량통제 및 safety line 설치 - 119구급차 운영, 환자이송
	인근 소방서	- 119구급차 운영, 환자 이송
	소방항공대	- 소방헬기 운영, 환자 이송
해경,산림청		- 헬기운영, 환자이송
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기 관	- 경환자 진료
	지역응급의료 센터	- 중환자 진료
	권역응급의료 센터	- 중환자 진료, 재난의료지원팀 파견
민간 이송업		- 구급차 운영, 환자 이송

□ 현장응급의료소 편성 및 업무 수행 절차

○ 현장 응급의료 지원반의 설치·운영

- 재난현장 : 제1통제선 이내
- 현장지휘소 : 긴급구조활동 총괄 지휘통제
- 현장응급의료소 : 재난현장과 현장지휘소에서 가까운 장소에 설치
(제1통제 선과 제2통제선 사이)
- 재난현장과 현장지휘소에서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되 구급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통신이 확보되고 제2의 사고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환자의수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제2통제선 : 현장 출입 및 교통통제, 오염통제
- 현장 응급의료지원단 조직체계
 - 보건소 신속대응반(5명) + 지역 DMAT 2개팀(16명)을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 기본편성 : 4개반/21명

구분	합계	현장응급 의료소장	중증도 분류반	응급 처치반	이송반	행정 지원반
합계	21	1	3	8	6	3
보건소장	1	1	-	-	-	-
의사	5	-	1	3	1	-
간호사	7	-	1	3	2	1
응급구조사	3	-	1	1	1	-
행정요원	5	-	-	1	2	2

주) 1. DMAT는 초기업무수행 후 현장응급의료소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 반 업무지원
2. 분류반 및 이송반 의사의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응급구조사로 대체 가능

□ 현장 응급의료지원단 반별 임무

구분	임무 및 역할
현장응급 의료소장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휘·감독 - 유관기관과 연계체계 유지
중증도 분류반	- 환자별 중증도 분류표를 작성 및 부착 - 환자 사진촬영 및 기록 - 중증도 분류결과에 따라 응급처치반 또는 이송반에 환자 인계조치
응급처치반	- 중증도 분류결과에 응급처치 실시 - 응급처치 후 귀가 또는 이송판정 조치 - 중증도 분류표에 응급처치 내역 및 이송요청사항 기록 - 의료물품, 장비 등 자원현황 파악 및 공급 - 소장에게 환자현황 보고 및 필요시 추가지원 요청
이송반	- 중증도 분류표의 이송기록 작성 - 해당 정보센터에 의뢰하여 관할구역 내 응급의료 자원현 황 및 적절 이송병원 확인 및 이송 현장지휘소와 협의하여 119구급대 적극 활용) - 환자별 이송현황 기록유지 및 상황보고
행정지원반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가동 - 현장응급의료소 반별의 요청사항 파악·보고 및 운영지원 - 환자통계 및 상황판 관리 - 현장지휘소와 연락체계 유지 - 언론, 보호자 등 외부요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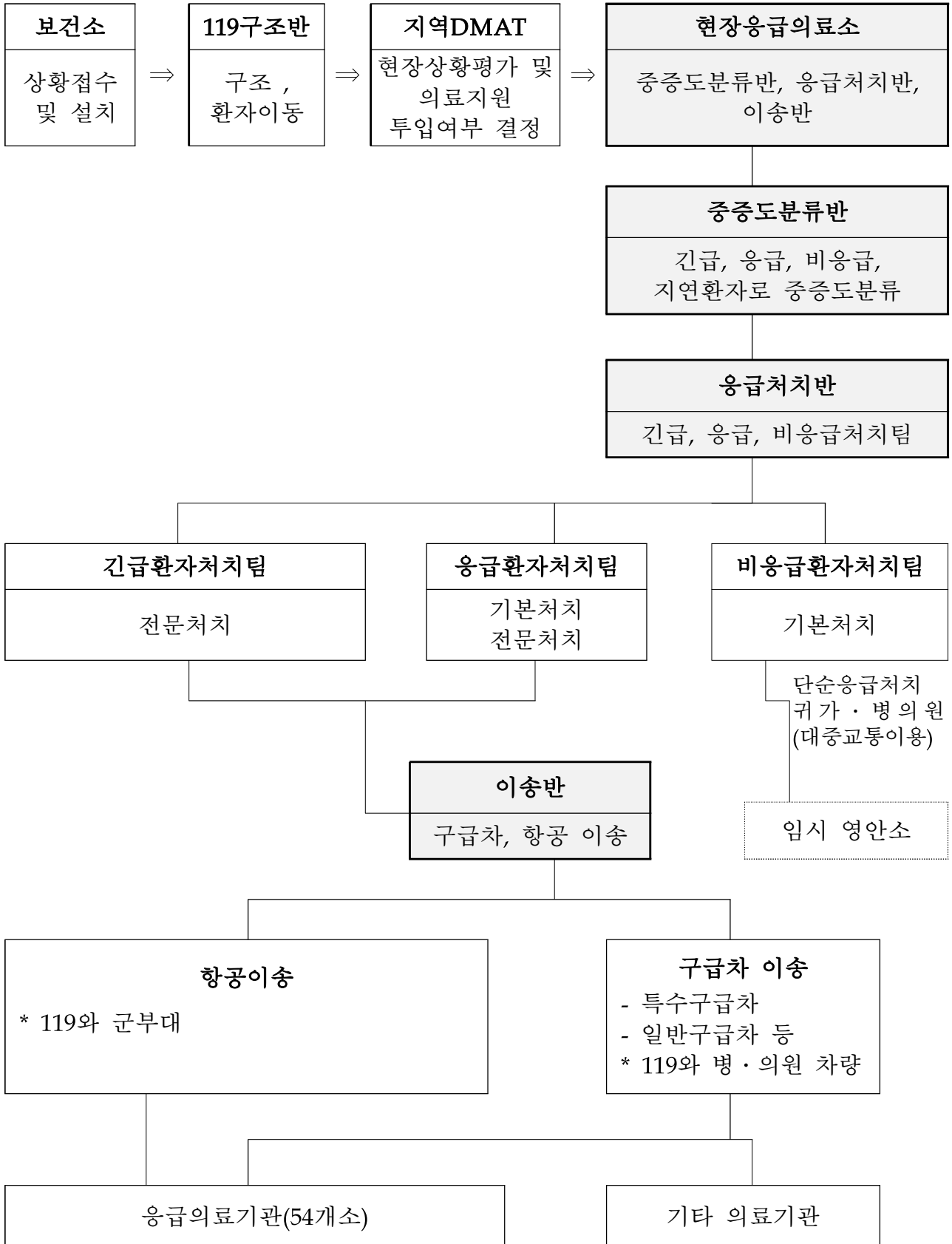
○ 반별 주요 기록 사항

기록지 종류	작성	내용
중증도분류표	중증도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중증도분류반: 환자정보, 활력징후, 주증상, 진단명, 분류결과, 과거력(가능하면) 응급처치반: 활력징후, 처치기록, 분류결과 이송반: 활력징후, 분류결과, 처치결과, 이송기록
환자관리기록지	이송반	환자정보: 분류표번호, 이름, 성별, 나이 환자관리요청사항: 요청자, 요청사항 환자관리수행사항: 최종결정, 이송수단, 이송자, 담당자
일일환자이송 현황보고서	이송반	병원명, 환자수(긴급, 응급, 지연, 사망, 총환자수)
일일활동보고서	소장 (행정지원반)	일시, 활동장소, 사고유형, 활동단원, 현장처치 환자수, 특이사항, 기록자

○ 중증도 분류 등급

등급	환자 손상
<p style="text-align: center;">긴급(적색) (Immediat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정지, 기도폐쇄 및 심한 호흡곤란 - 목격된 심정지 - 지혈이 어려운 출혈 또는 두 군데 이상의 출혈 - 중증도의 두부손상 : 의식이 없는 환자 - 개방성 흉부손상 및 분쇄성 흉부손상 - 개방성 복부손상 및 분쇄성 복부 및 골반의 손상 - 심각한 쇼크, 수축기 혈압이 80mmHg가 안되는 환자 - 호흡기를 포하한 환자 - 심각한 내과적 문제를 동반한 경우 : 심질환, 뇌졸중, 열사병, 저체온증, 간질중첩증, 중증의 천식발작, 고열, 약물 중독 등 - 의식이 없는 환자 - 경추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 말초부위에 맥박이 만져지지 않는 골절 - 대퇴골 골절 - 개방성 안구손상
<p style="text-align: center;">응급(황색) (Delaye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도의 화상 - 경추 외의 척추손상 - 중증도의 출혈 및 두 군데 미만의 출혈 - 두부손상이 있으나 의식이 있는 환자 - 다발성 골절 - 배부(back)의 손상 - 안정화된 중독환자
<p style="text-align: center;">비응급(녹색) (Minim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증의 출혈 - 경증의 골절 및 경증의 연부조직 손상 - 중등 또는 경증의 화상
<p style="text-align: center;">사망예상 /사망(흑색) (Expectant /Dea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손상이 명확한 경우 - 20분 이상 호흡과 맥박이 없는 경우 -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이 불가능하거나 맥박과 호흡이 없는 손상을 입은 경우 - 두부가 절단된 경우 - 신체가 절단된 경우 - 몸 전체가 타 버린 경우

□ 현장응급의료소 업무수행 절차



IV. 행정 사항

□ 자치구청장은

- 서울시 민방위계획에 따라 세부 민방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서울특별시장에 제출
- 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2016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개선·보완

□ 전체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별도로 시달·통보하는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수립